

제13차 WTO 각료회의 결과와 후속 협상 동향: 평가 및 시사점

이천기 무역통상안보실 신통상전략팀장 (leeck@kiep.go.kr, 044-414-1361)

이주관 무역통상안보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jkleee@kiep.go.kr, 044-414-1089)

박지현 무역통상안보실 신통상전략팀 선임연구원 (jhpark@kiep.go.kr, 044-414-1136)

//////

차 례

1. 배경
2. 주요 협상·합의 내용
3. 평가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MC13은 MC12에서 이룬 성과를 기반으로 WTO 다자무역체제의 적실성 유지에 기여함.

- 일각에서 전망했던 '신중한 낙관론(cautious optimism)'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나,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두 건의 회원국 신규 가입, TRIPS 협정상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 연장, 최빈개도국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지원조치 합의,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 타결 등 일부 진전사항은 여전히 주목할 만함.
- 차기 WTO 각료회의는 2026년(카메룬)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MC13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이 계속될 예정임.

▶ MC13에서는 총 10건의 각료선언·결정이 채택되었으며, 주요 성과 및 경과는 다음과 같음.

-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차기 각료회의 또는 2026년 3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장한 후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향후 모라토리엄 추가 연장에 불리한 문구로 구성되어 있어 전자적 전송물 관세 유예 종료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복수국간 무역협정 중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금지를 규정하지 않은 교역국을 대상으로 모라토리엄 종료 이후를 대비한 정부와 기업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수산보조금] 최종 타결까지 몇 개 조항만을 남겨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i) 개도국 특별대우(S&DT), (ii) 강제노동 관련 조항에 이견이 있었음.
- 특히 개도국의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을 위한 전환기간에 관해 회원국간 이견이 확인되었으며, 미국은 수산보조금 협정에 선상 강제노동 사용에 관한 추가적인 투명성 요건이 포함될 것을 제안함.
- [농업] 농업협상에서는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가 낮았으며, 대부분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은 MC14로 연기됨.
- MC13 협상문안에 국내보조, 시장접근,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 수출금지·제한, 수출경쟁, 면화무역·면화 개발지원,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도(PSH) 등 7개의 광범한 이슈가 논의대상에 포함되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 가운데, 특히 인도가 주장하는 PSH에 대한 영구해법 마련을 두고 여전히 상당한 입장 차이가 확인됨.
- [개발] 'WTO 작업에서 개발 측면이 핵심'임을 재확인하고, 최빈개도국의 이해에 적절한 우선순위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함을 강조함.

////// 주요 내용(계속)

- MC14를 위한 준비 작업에서도 개도국 특별대우 이슈가 비중 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다만 WTO 협정에 규정된 모든 S&DT 조항의 적용과 운영을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추가 작업이 필요함.
- [WTO 개혁] MC13에서는 최초로 '각료 대화(ministerial conversation)' 세션을 개최하여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및 무역과 포용 이슈를 논의하였으며, 무역 및 산업정책(보조금) 논의에 관한 임시 작업반 설치 가 제안되었으나 컨센서스를 확보하지 못함.
- 분쟁해결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2024년 말까지 분쟁해결제도를 완비하기로 한 MC12에서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데 그침.
- [서비스 국내 규제] 서비스 국내 규제(SDR)에 관한 복수국간 합의의 발효가 MC13에서 확정·발표됨. 우리나라, 미국, EU, 중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서비스 무역의 92.5%를 차지하는 72개 WTO 회원국이 참여 중이며, WTO에 따르면 서비스 국내 규제 규칙의 발효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무역비용이 1,25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IFD) 협정 최종 타결이 발표됨. 128개국 WTO 회원국이 참여하는 WTO 내 최대 규모의 복수국간 이니셔티브이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규정을 간소화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MC13 이후 2024년 3월 22일 일반이사회 정례회의에서 IFD 협정의 WTO 체제 편입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복수국간 이니셔티브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인도, 남아공, 튀르키예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무역과 환경] MC13을 앞두고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이니셔티브에서 제안서가 발표되었고, WTO 각료회의 최초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각료 대화가 개최되었음에도 MC13의 최종 결과문서에 반영되지 않는 등 무역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음.

▶ 복수국간 협상 결과의 WTO 협정상 적법성을 확보하고 편입·이행하는 방식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

- MC13에서는 소수의 회원국이 WTO의 컨센서스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여 불균형적으로 전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이 포착됨.
- 소수 회원국이 체제 전반을 교란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식은 WTO 체제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후속 협상에서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WTO의 의사결정 규칙에 관해 재검토가 필요함.
- WTO 다자 차원에서 합의 도출이 어려운 시기에 복수국간 협상(JSI)이 유력한 대안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복수국간 협상에서 도출된 성과의 WTO 협정상 적법성 확보와 편입·이행 방식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
- WTO 내 복수국간 이니셔티브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음. 2021년에 인도, 남아공, 나미비아는 '복수국간 협상이 WTO 협정의 핵심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개진함.
- 현재 IFD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두고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이후 투자원활화 JSI에 이어 전자상거래 JSI에서 복수국간 합의가 타결된 이후 유사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제기국의 대외적 포지셔닝과 내부 논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통상법적 대응방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1. 배경

■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이하 'MC13')가 열림.

- MC13은 2024년 2월 29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들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엄, 수산보조금, 농업, 분쟁해결제도 개혁 등 핵심 이슈에서 컨센서스를 도출하지 못해 예정보다 이틀 늦은 3월 2일 새벽까지 협상이 연장됨.
- 그러나 안건으로 상정된 대다수 분야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최소한의 컨센서스만 확인됨. MC13은 3월 2일 토요일 새벽에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엄 및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 연장으로 마무리됨.
- 그 외에 두 건의 WTO 신규 가입, 서비스 국내 규제 신설 규칙 발효, TRIPS 협정에 따른 비위반 및 상황제소에 대한 유예 연장,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국의 전환 지원, 위생검역·기술무역장벽 관련 개도국 특별대우 등에서 일정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 반면 수산보조금과 농업 협상에서는 유의미한 성과가 없었으며, 코로나19 백신 관련 TRIPS 협정 의무면제(웨이버)의 확대적용, 분쟁해결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의장국을 맡은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은 120여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함. MC13에서는 WTO 회원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했고, MC13 이후 WTO 협정 편입 논의를 본격화함.

■ MC13에서는 총 10건의 각료선언·결정이 채택되었으며, 주요 협상·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1. MC13에서 채택된 각료선언·결정 목록 및 주요 내용

분류	문서번호	주제 또는 문서명(문서형식)	주요 내용
1	WT/MIN(24)/DEC	아부다비 각료선언	-
2	WT/L/1186; WT/MIN(24)/31	코모로의 WTO 가입 (각료결정)	• 코모로와 동티모르의 WTO 신규 가입 승인
3	WT/L/1187; WT/MIN(24)/32	동티모르의 WTO 가입 (각료결정)	
4	WT/L/1188; WT/MIN(24)/33	소규모 경제국 작업프로그램 (각료결정)	• (i) 소규모 경제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기회와 한계, (ii) 식량안보 관련 공급망의 중요성 및 비관세조치의 무역비용에의 영향, (iii) 소규모 경제국의 기후·무역정책 통합방안 검토 지지
5	WT/L/1189; WT/MIN(24)/34	최빈개도국 범주에서 졸업한 국가를 위한 WTO의 원활한 전환지원조치(각료결정)	•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국은 추가로 3년간 분쟁해결양해(DSU)상 특별대우 향유 •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국은 3년간 기술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격 유지

분류	문서번호	주제 또는 문서명(문서형식)	주요 내용
6	WT/L/1190; WT/MIN(24)/35	무역기술장벽을 낮추기 위한 규제 협력 강화(각료선언)	• 제품 표준·규제 관련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TBT 위 원회의 작업 촉구
7	WT/L/1191; WT/MIN(24)/36	SPS 협정 및 TBT 협정의 특별 및 차등 대우 조항의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이행에 관한 선언(각료선언)	• 개도국을 위한 교육·기술 지원 개선, SPS·TBT 조치 투명성 제고, 개도국 특별대우 이행 및 적용 개선 작 업을 지속하고 2024년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로 합의
8	WT/L/1192; WT/MIN(24)/37	분쟁해결제도 개혁 (각료결정)	•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 가속화 •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는, 완전하 게 기능하는 분쟁해결제도 복원 노력
9	WT/L/1193; WT/MIN(24)/38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 (각료결정)	• 전자적 전송물 관세 미부와 관행을 제14차 각료회의 (이하 'MC14') 또는 2026년 3월 31일 중 먼저 도래 하는 시점까지 유지하기로 합의
10	WT/L/1194; WT/MIN(24)/39	TRIPS 협정 비위반·상황 제소 (각료결정)	• TRIPS 협정상 비위반·상황 제소에 대한 유예 기간을 MC14까지 연장

자료: 다음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WTO, "MC13 outcomes: ministerial decisions and declarations,"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c13_e/documents_e.htm.

2. 주요 협상·합의 내용

가. 두 개 신규 회원국의 WTO 가입

■ MC13에서 WTO는 코모로와 동티모르 두 국가를 WTO의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승인하였음.

- 코모로와 동티모르가 각각 17년과 7년의 가입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26일에 열린 MC13 개막식에서 WTO의 신규 가입국으로 최종 승인됨.
- 두 회원국의 신규 가입으로 WTO 회원국 수는 166개로 늘어났으며, 이로써 전 세계 무역의 98%를 차지함.¹⁾
- 두 회원국은 자국의 WTO 가입의정서 수락(비준) 절차 완료 후 30일 이후에 WTO 가입이 완료될 예정임.

나. 전자상거래

■ MC13에서는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에 관한 각료결정²⁾이 채택됨.

1) Dentons(2024.3.4.), "Outcomes of the WTO's 13th Ministerial Conference."

2) Ministerial Conferenc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 Ministerial Decision," WT/MIN(24)/38, WT/L/1193, 4 March 2024.

- 다자 차원의 WTO 작업프로그램 외에 WTO에서의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논의는 2019년 3월 출범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 선언 이니셔티브(JSI: 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에서 진행 중임.
- 전자상거래 JSI는 복수국간 협상이므로, 다자 차원의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과는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논의에 일부 진전이 있으나 MC13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되어옴. 그 결과 MC13에서 안전으로 상정되지 않음.
- 전자상거래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은 MC11에서 71개 회원국이 2017년 12월 13일에 첫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하고,³⁾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76개 회원국이 두 번째 공동성명⁴⁾을 발표한 이래 본격화됨. 현재 전 세계 교역의 90% 이상을 구성하는⁵⁾ 90개 WTO 회원국이 전자상거래 JSI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1) MC13 각료결정의 주요 내용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연장] 차기 각료회의 또는 2026년 3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장한 후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함.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이하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와 함께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도 해당 일에 만료될 예정임.⁶⁾
- WTO에서는 1998년 이후 국가간 전자적 전송물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왔음.
 - 1998년 9월에 일반이사회는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에 관한 결정⁷⁾을 채택함. 동 작업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8년에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현행 관행을 지속’하기로 하는 한시적인 모라토리엄을 최초로 도입하고, 작업계획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에 의해 연장하기로 함.⁸⁾
 - 이후 작업프로그램에는 진전이 거의 없었던 반면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을 약 2년마다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갱신해옴. 회의가 결렬되었던 제5차 WTO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은 1998년 제2차 각료회의 이후 제12차 각료회의⁹⁾까지 연장됨.
- MC13에서 모라토리엄 연장에 관한 협상은 2024년 2월 29일에 개시되었고, 대다수 회원국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도국의 반대로 인해 모라토리엄 연장에 대한 합의는 MC13 협상의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짐.
 - MC13에서 연장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은 2024년 3월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음.

3) Ministerial Conference,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WT/MIN(17)/60, 13 December 2017.

4) WTO,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WT/L/1056, 25 January 2019.

5) WTO, “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E-Commerce: Co-conveners’ Update,” December 2020.

6) Ministerial Conferenc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 Ministerial Decision,” WT/MIN(24)/38, WT/L/1193, 4 March 2024, para. 5.

7) General Council,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WT/L/274, 30 September 1998.

8) 한편 WTO 다자 차원의 느린 협상 속도에 대응해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복수국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별도의 트랙으로 WTO 내에서 진행되어 옴. 다자 차원의 WTO 작업프로그램 외에 WTO에서의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논의는 2019년 3월 출범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 선언 이니셔티브(JSI: 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데이터 관련 이슈 등에 대해 회원국간 이견이 심화되는 상황임.

9) Ministerial Conferenc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 Ministerial Decision,” WT/MIN(22)/32, WT/L/1143, 22 June 2022.

■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 재활성화]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을 재활성화하기로 합의하고, 동 프로그램의 개발 측면과 개도국·최빈개도국의 필요성을 강조함.¹⁰⁾

- 1998년 9월에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된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에 관한 결정¹¹⁾에 따라 서비스무역이사회, 상품무역이사회,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 무역개발위원회 등 네 개의 WTO 기관이 ‘전 세계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모든 무역 관련 이슈를 검토’할 권한을 위임받음.
- MC13에서는 WTO 작업프로그램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회원국의 경제, 재정 및 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개발 차원에 중점을 두고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에 따른 작업을 지속적으로 재활성화하는 데 합의함.
- 또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유예의 범위 및 정의, 모라토리엄이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가적인 실증적 증거를 검토하고 개도국·최빈개도국의 디지털 산업화를 위해 경쟁조건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함.¹²⁾
-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개도국·최빈개도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됨.¹³⁾

2) 주요 쟁점

■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의 정의와 범위, 영향에 대해 선진국과 일부 개도국 간 대립이 심화됨.

-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은 전자적 전송물 관세 유예를 영구화하자는 입장이며, 인도,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 일부 개도국은 디지털 격차 심화, 세수 감소, 자국의 디지털 산업화를 이유로 영구화에 반대함에 따라 모라토리엄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함.
 -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성된 32개¹⁴⁾ WTO 회원국은 차기 각료회의까지 모라토리엄 연장 주장¹⁵⁾
 -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2024년 2월 23일에 회담한 WTO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서¹⁶⁾에는 모라토리엄에 관해 언급되지 않음. 그러나 MC13에서 인도는 모라토리엄 연장에 반대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MC13 폐막 세션에서 모라토리엄을 연장하는 문안에 합의하였다가 입장을 철회하고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모라토리엄 연장 이슈를 협상 마지막까지 레버리지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짐.¹⁷⁾

10) Ministerial Conferenc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 Ministerial Decision,” WT/MIN(24)/38, WT/L/1193, 4 March 2024, para. 1.

11) General Council,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WT/L/274, 30 September 1998.

12) WT/MIN(24)/38, WT/L/1193, para. 2.

13) WT/MIN(24)/38, WT/L/1193, para. 3.

14) 아르헨티나,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코스타리카, EU, 조지아, 과테말라,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리히텐슈타인, 마카오, 몰도바,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라과이, 페루, 카타르, 대만,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15) Ministerial Conferenc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 Communication from Argentina; Australia; Brunei Darussalam; Canada; Chile; China; Costa Rica; European Union; Georgia; Guatemala; Hong Kong, China; Iceland; Israel; Japan; Korea, Republic of; Liechtenstein; Macao, China; Moldova, Republic of; Montenegro; New Zealand; North Macedonia; Norway; Paraguay; Peru; Qatar;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Singapore; Switzerland; Thailand; Ukraine; United Kingdom and Uruguay - Revision,” WT/MIN(24)/W/8/Rev.1, 22 February 2024.

16) Ministerial Conferenc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 Communication from India and Indonesia - Revision,” WT/MIN(24)/W/7/Rev.1, 23 February 2024.

17) CSIS(2024.3.8.), “Insight into the 13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 남아공과 인도네시아는 2024년 2월 24일에 회람한 의견서에서 모라토리엄 종료를 주장¹⁸⁾
- 2024년 2월 16일에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연안 개도국 그룹(ACP 그룹)은 모라토리엄 연장을 지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발표¹⁹⁾
- 전자적 전송물에 서비스나 콘텐츠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선진국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임.
- 전자적 전송물에 관한 관세 유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인도,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은 세수 손실에 대해 우려하며 개도국의 디지털 산업화를 위한 주요 수입원으로 관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UNCTAD는 양허관세를 사용할 경우, 모라토리엄으로 선진국의 세수 손실은 2억 8,900만 달러, 개도국은 100억 달러(최빈개도국 제외), 최빈개도국은 15.1억 달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26.3억 달러로 추정²⁰⁾
 - 선진국은 관세자유화로 인한 후생증대 가능성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이 더 높고,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관세 수입을 초과하며, 모라토리엄으로 발생하는 개도국의 세수 손실은 전체 정부 수입의 0.08~0.23%에 불과하다고 주장²¹⁾

표 2. WTO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 제안서를 통한 주요국 입장

분류	인도네시아·남아공 의견서	인도·인도네시아 의견서	32개 회원국 의견서	ACP 그룹 의견서
우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및 기술격차 •디지털 경제로 인한 불공평한 이익 •모라토리엄 연장으로 디지털 산업화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격차 •디지털 경제로 인한 불공평한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확실성과 예측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급 없음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라토리엄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급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MC14까지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관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MC14까지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관행 유지
작업프로그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문제를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에 따른 작업의 재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 차원에 따라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에 따른 작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에 따른 작업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범사례 교환, 국제기구 워크숍 등을 포함한 전용 토론을 통해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 재활성화
개도국·최빈개도국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도국의 경제·재정·개발 필요를 고려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문제 검토 •개도국·최빈개도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 •개도국의 자국 내 증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도국의 경제·재정·개발 필요를 고려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문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프로그램에 개발 관련 문제 포함 •모라토리엄 연장의 범위·정의·영향에 대한 추가 논의 •회원국들이 식별한 전자상거래 관련 문제를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 차원에 중점 •교육 및 역량 강화 •모라토리엄 연장의 범위·정의·영향에 대한 추가 논의 •전자상거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

18) Ministerial Conferenc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 Communication from Indonesia and South Africa - Revision," WT/MIN(24)/W/6/Rev.1, 24 February 2024.

19) Ministerial Conferenc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 Communication from Samoa on Behalf of the ACP Group," WT/MIN(24)/W/9, 16 February 2024.

20) Banga, R.(2019), "Growing Trade in Electronic Transmission: Implications for the South," UNCTAD Research Paper, No. 29, UNCTAD/SER.RP/2019/1/Rev1, p. 29.

21) Andrenelli, A. and J. Lopez Gonzalez(2019), "Electronic Transmissions and International Trade - Shedding New Light on the Moratorium Debate," OECD Trade Policy Papers, No. 233, p. 15.

분류	인도네시아·남아공 의견서	인도·인도네시아 의견서	32개 회원국 의견서	ACP 그룹 의견서
	기업 플랫폼 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금 설립		결하기 위해 다른 국제 기구 등과 WTO의 지속적인 협력 약속	제기구 등과 WTO의 지속적인 협력 약속
검토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이사회가 작업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이사회가 정기 검토를 실시, 차기 각료회의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이사회가 작업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차기 각료회의에 보고 실증적 증거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라토리엄 연장의 범위·정의·영향에 대한 추가 논의 및 실증적 증거 수집 상기 사항 및 작업프로그램에 관해 일반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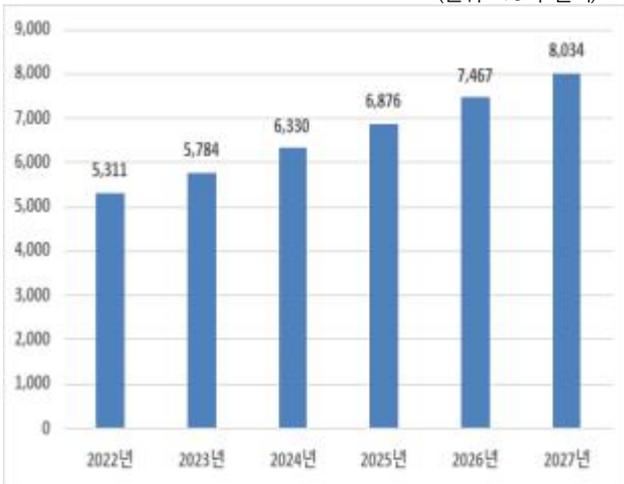
자료: WT/MIN(24)/W/6/Rev.1(인도네시아·남아공); WT/MIN(24)/W/7/Rev.1(인도·인도네시아); WT/MIN(24)/W/8/Rev.1(32개 WTO 회원국); WT/MIN(24)/W/9(ACP그룹)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이슈는 최근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및 디지털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 기인함.

- 세계 전자상거래 매출은 2023년 5조 7,840만 달러로 전 세계 소매 매출의 19.4%를 차지하였고, 2027년에는 8조 달러를 넘어 전 세계 소매 판매의 1/4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Statista).
- 세계 디지털미디어²²⁾ 매출은 2023년 6,277억 달러에서 2027년 8,48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세계 전자상거래시장 전망

(단위: 10억 달러)



자료: Statista.

그림 2. 세계 디지털미디어시장 전망

(단위: 10억 달러)



자료: Statista.

■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에 관한 MC13 각료결정에는 향후 모라토리엄 추가 연장을 반대하기에 유리한 문구가 사용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2) 디지털미디어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배포되는 시청각 미디어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으로, 여기에는 디지털 비디오 콘텐츠, 디지털 음악, 다양한 디바이스용 디지털 게임과 전자서적 콘텐츠가 포함됨(Statista).

- 전자적 전송물의 유예기한에 대한 종료기한을 명시함으로써 2년마다 관행적으로 연장되어온 모라토리엄이 종료될 수 있음을 시사함.
 - MC11까지는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 관행을 유지한다고만 언급했을 뿐 연장 후 종료된다는 내용이 없었으나, MC12에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유예 종료 가능성이 공식 언급됨.²³⁾
 - MC13 각료결정은 더 나아가 모라토리엄의 만료를 전제로 문구가 구성되어 있음. 즉 모라토리엄을 다음 각료회의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제14차 각료회의 또는 2026년 3월 31일 중 더 이른 시점까지만 유지되며 해당일에 만료될 것임을 규정²⁴⁾
- 2026년에 모든 WTO 회원국의 컨센서스를 통해 모라토리엄이 추가 연장될 가능성을 현시점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가장 최근의 두 각료회의(MC12, MC13)에서 모라토리엄의 연장에 대한 합의가 특히 어려웠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금번 모라토리엄이 마지막 연장이 될 것이라는 평가²⁵⁾가 있음.
- 또는 2026년 카메룬에서 개최 예정인 MC14가 연기되는 경우 MC14 이전에 모라토리엄이 먼저 종료될 가능성도 있음. 이 경우 모라토리엄은 2026년 3월 31일에 최종 만료되게 됨.

다. 수산보조금

■ MC13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는 협정의 규율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컨센서스에 이르지 못함.

- 회원국들은 2단계 수산보조금 협정 타결을 위해 수석대표회의(HOD)에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MC13에서는 MC12에서 채택된 1단계 수산보조금 협정 이상의 추가적인 논의 진전은 없었음.
- 실질적인 협상 마지막 날이었던 3월 1일에는 수산보조금 협상 분과에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 점이 이미 분명해진 시점이었으므로, 수산보조금 관련 사항은 MC13 폐막 세션에 상정되지 않음.
- 아부다비 각료선언에도 수산보조금 협상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OCOF 기여 보조금에 대한 규제 마련을 합의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 기한도 설정되지 않음.

■ 2022년 MC12 당시 회원국들은 1단계 수산보조금 협정²⁶⁾을 타결함.

- 1단계 수산보조금 협정은 (i)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관련 보조금,²⁷⁾ (ii) 과잉어획된 어족자원(OFS: Overfished Stocks) 어업 관련 보조금,²⁸⁾ (iii) 공해 비규제 어획에 대한 보조금²⁹⁾을 금지하고 개도국에 추가적인 유연성을 부여함.³⁰⁾

23)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현행 관세 미부과 관행을 MC13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MC13이 2024년 3월 31일 이후로 연기될 경우 회원국들 또는 일반이사회가 연장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모라토리엄은 2024년 3월 31일에 종료된다고 규정.

24) "We agree to maintain the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until the 14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or 31 March 2026, whichever is earlier. The moratorium and the Work Programme will expire on that date." Ministerial Conferenc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 Ministerial Decision," WT/MIN(24)/38, WT/L/1193, 4 March 2024. [밑줄 추가]

25) White & Case(2024.3.7.), "WTO Extends E-Commerce Tariff Moratorium as Broader Negotiations Continue," Alert. 응고지 사무총장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매우 확고하게 종료일에 합의한 것이며, 추가 연장 가능성은 낮음. DAWN(2024.3.3.), "WTO talks end with no major win."

26) WTO,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ulesneg_e/fish_e/fish_e.htm.

27) WTO 수산보조금 협정 제3조.

28) WTO 수산보조금 협정 제4조.

표 3. 1단계 수산보조금 협정의 주요 내용

분류	내용
금지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IUU 보조금')(제3조) ② 과잉어획 어족자원(overfished stock) 어획에 관련된 보조금('과잉어획 보조금')(제4조) ③ 비규제 공해상에서의 어업에 관련된 보조금(제5.1조)
특별한 주의·적절한 자제가 요구되는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조금 공여국을 기국으로 하지 않는 선박에 대한 보조금(제5.2조) ② 어족자원 상태가 파악되지 않는 어족의 어획에 관련된 보조금(제5.3조)
통보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보조금협정에 따른 정기 통보의무³¹⁾에 더하여, 회원국은 보조금 제공 대상 어업활동의 유형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부담(제8.1조 제(a)항) • 가능한 한도 내에서 △어획대상 어족자원의 상태, △어획량 자료, △어획대상 어족자원의 보존·관리 조치, △보조금 수혜 선단·선박에 관한 정보 또한 통보대상임(제8.1조 제(b)항). • IUU 어업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한 선박·운항자 목록의 연례 통보 의무(제8.2조) • 그 외 △수산보조금협정의 이행 및 운영을 위해 회원국이 취한 조치(제8.3조), △어업제도(제8.4조), △회원국이 참여하는 RFMO/A에 관한 설명(제8.6조) 등이 통보대상임.
개도국 특별대우 (S&D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이 공여한 수산보조금 관련 분쟁에는 2년 동안 평화조항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최빈개도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행한 어획 활동에 관련된 ① IUU 보조금, ② 과잉어획 보조금에는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이후 2년 동안 WTO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제3.8조, 제4.4조). • 최빈개도국이 관여된 사안에는 적절한 자제를 발휘, 해결책 모색 과정에서 최빈개도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의무(제6조) • 개도국·최빈개도국의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역량강화를 제공하기 위한 '수산기금 메커니즘(WTO Fisheries Funding Mechanism)' 설립(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메커니즘은 ① 수산보조금 정책 및 관행에의 수산부문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② 지속가능 수산관리제도 강화, ③ (특히 어업 관련 정보 정책 및 관행에 관한) 통보 및 투명성 의무 준수 지원 예정 • 통보의무 관련, ① 전 세계 어획량의 0.8% 이하를 구성하는 개도국 및 ② 최빈개도국은 어획 관련 정보를 (격년이 아닌) 4년마다 통보 가능(제8.1조 각주 13)
후속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보조금에 대한 포괄적 협정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잉어획 및 과잉능력에 기여하는 보조금 [subsidies contributing to overcapacity and overfishing(OCOF)]을 규율하기 위한 추가 조항 신설을 MC13에 권고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 - 수산보조금 규범 협상그룹이 후속 협상 권한을 위임받음.

자료: 다음 자료를 요약·정리함. 이천기(2023), 「[WTO] 수산보조금 협정(2022. 6.)」, KLRI Global Legal Web-zine 2023-1, pp. 15~19.

- 1단계 수산보조금 협정은 '적절하고 효과적인(appropriate and effective)' 개도국 특별대우를 수산보조금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MC13에서 제2차 협상 대상이기도 하였음.³²⁾
- 동 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래 모든 회원국의 컨센서스를 통해 신설된 두 번째 다자 협정이자³³⁾ 해양 및 수산자원의 보존을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환경 지속가능성 목표를 규정한 첫 번째 협정이라는 데 의의가 있음.

29) WTO 수산보조금 협정 제5.1조.

30) WTO 수산보조금 협정 제6조 및 제7조.

31) 격년마다 6월 30일까지 자국의 특정성 있는 보조금을 WTO에 통보할 의무(WTO 보조금협정 제25조).

32) Ministerial Conference,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 Ministerial Decision of 17 June 2022," WT/MIN(22)/33, WT/L/1144, 22 June 2022, para. 4.

33) WTO 출범 이래 신설된 첫 번째 다자협정은 2013년 채택, 2017년 발효한 무역원활화협정(TFA)임.

- 다만 1단계 협정은 과잉어획·과잉어획능력(OCOF: overcapacity and overfishing)에 기여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 1단계 수산보조금 협정은 ‘과잉어획(overfishing)’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과잉어획된’ 어족자원 (OFS: Overfished Stocks)의 경우에만 보조금을 규제함. 즉 1단계 협정에서는 ‘과잉어획된 어족자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만 금지하는 것으로, 어족자원이 과잉어획된 것으로 간주되기 이전까지는 보조금 공여가 가능함.
- 1단계 협정은 아직 발효 이전이며 회원국 비준 절차가 진행 중임.
 - MC12에서 타결된 1단계 수산보조금 협정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WTO 회원국의 3분의 2(110개국)가 WTO에 수락서를 기탁(즉 비준)하여 수산보조금 협정 의정서를 공식 수락해야 함.
 - MC13 종료 시까지, 71개 회원국(27개 EU 회원국 포함)이 1단계 수산보조금 협정을 공식 수락함.

1) MC13 수산보조금 협상문안의 주요 내용

■ 제2차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는 1단계 협정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사항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됨.

- MC13에서 회원국들은 2022년 MC12 당시 제1차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OCOF에 기여하는 보조금에 관한 합의 타결을 목표로 하였음.
- WTO에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MC13까지의 4주를 ‘수산의 달(Fish Month)’로 지정하여³⁴⁾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 2월 16일에 MC13 수산보조금 협상문안³⁵⁾을 상세 설명자료³⁶⁾와 함께 회람함. 협상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속가능성 기준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를 적용받지 않는 한 OCOF 보조금 공여 금지³⁷⁾
 - 협정상 좀 더 엄격한 추가 규율과 조사를 받는 대상국에 관해, 이전 협상문안은 단순히 상위 20개 보조금 지급국을 추가 규율·조사 대상국으로 규정하였던 반면 2월 16일 자 협상문안에서는 WTO의 모든 선진국, 상위 10대 보조금 지급국 목록에 포함된 모든 개발도상국, 영해 밖에서의 어업(원양어업)에 중대하게 관여하는 개도국이 추가 규율·조사 대상으로 규정됨.³⁸⁾
 -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을 위한 전환기간, 개도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또는 200해리(미정)의 국가관할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영세어업에 대한 보조금 공여 가부 등 개도국 특별대우의 일부 구체사항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협상문안에 남아 있었음.³⁹⁾
 - 개도국은 조업 시즌이 아닌 경우에도 영세어업·소규모 어업에 소득 지원(income support)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됨.⁴⁰⁾
- WTO 수산보조금 협상의장은 MC13을 앞두고 회원국간에 이견이 큰 사안으로 (i) 원양어업 보조금에 대한 규율,⁴¹⁾ (ii) 개도국이 영세어업·소규모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동 예외의 12해리 또는 200해리 이내 어업에의 적용 여부⁴²⁾ 등)을 언급함.

34) WTO(2024.1.15.), “At start of “Fish Month,” WTO members endorse draft text as basis for work towards MC13.”

35) Ministerial Conference, “Additional Provisions on Fisheries Subsidies - Draft Text,” WT/MIN(24)/W/10, 16 February 2024.

36) Ministerial Conference, “Additional Provisions on Fisheries Subsidies - Draft Text - Addendum,” WT/MIN(24)/W/10/Add.1, 16 February 2024, p. 3ff(Detailed Explanation of the Provisions of WT/MIN(24)/W/10).

37) WT/MIN(24)/W/10, 제A.1.1조 제(a)항.

38) *Ibid*.

39) WT/MIN(24)/W/10, 제B.1조 내지 제B.4조.

40) WT/MIN(24)/W/10, 제A.1조 제(e)항 및 제B.4조 제(a)항.

41) WT/MIN(24)/W/10, 제A.2조.

■ 이후 MC13 협상 중에 수산보조금에 관한 새로운 협상문안⁴³⁾이 3월 1일에 회람됨.

- 2024년 3월 1일 자 협상문안은 10대 수산보조금 공여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규정하는 하이드리드 2단계 접근법을 포함하는 등 MC13에 앞서 회원국들에 회람된 2월 16일 자 협상문안과 유사한 내용을 다수 유지함.
-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첫째, 3월 1일 자 협상문안은 회원국이 자국의 관할권 외 영역에서의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완화함.
 - 2024년 2월 16일 자 협상문안에서는 관할권 밖의 어업에 대해 ‘회원국은 보조금을 공여하거나 유지해서는 안 된다(No Member shall grant or maintain subsidies)’는 금지 의무를 규정하였던 것에서, 3월 1일 자 협정문안은 ‘회원국은 보조금 공여 회원국의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실제 또는 예상되는 어획 또는 어획 관련 활동을 조건으로 하거나 이와 연계된 보조금을 공여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shall refrain,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해야 한다는 자제 의무로 변경됨(표 4의 1번 참고).
- 둘째, 후속적인 운영 검토 대상과 관련하여, 2월 16일 자 협상문안에서 2단계 협정이 과잉어획·과잉어획능력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였던 것에서, 3월 1일 자 협상문안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다양한 어업 활동 및 관련 수산보조금 총액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에서의 기여 여부를 평가하도록 운영 검토의 범위가 확대됨(표 4의 5번 참고).
- 셋째, 2단계 협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을 일차적으로 상품무역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던 것에서, 개선 권고사항을 상품무역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후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추가 논의하도록 한 단계 절차를 추가함(표 4의 6번 참고).

표 4. 2024년 2월 16일·3월 1일 자 수산보조금 협상문안의 주요 변경사항 비교

분류	2024년 2월 16일 자 협상문안	2024년 3월 1일 자 협상문안
1	A.2(a). [보조금 공여국의 관할권을 벗어난 영역에서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어업 또는 어업 관련 활동을 조건으로 하거나 이와 연계된] <u>보조금을 공여·유지하지 않을 의무</u>] ※ 조항 전체가 합의 미도출 상태로 전체 꺾쇠괄호 [] 처리	A.2(a). 보조금 공여국의 관할권을 벗어난 영역에서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어업 또는 어업 관련 활동을 조건으로 하거나 이와 연계된 보조금의 공여· <u>유지</u> 를 가능한 한 자제할 의무
2	B.1. 제A.1조에 따른 금지의무는 최빈개도국에 적용되지 않음.	B.1. 제A.1조는 최빈개도국에 적용되지 않음.
3	B.2. 연간 전 세계 해양 어획량의 [0.8%] 이하인 개도국은 제A.1조의 보조금을 어업 또는 어업 관련 활동에 공여·유지 가능 ※ 일부 합의 미도출 부분에 꺾쇠괄호 [] 처리	B.2. 연간 전 세계 해양 어획량의 0.8% 이하인 개도국은 제A.1조의 보조금을 공여·유지 가능
4	B.4(a). [...] 개도국은 주로 저소득·자원부족·생계형 소규모·영세어업 또는 어업 관련 활동에 대해 제A.1조의 보조금을 <u>영해기선으로부터 [12] [200] 해리까지</u>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공여·유지 가능	B.4(a). 개도국은 주로 저소득·생계형 소규모·영세어업 또는 어업 관련 활동에 대해 제A.1조의 보조금을 공여·유지 가능

42) WT/MIN(24)/W/10, 제B.4조 제(a)항.

43) World Trade Online (2024.3.1.), "Revised WTO fisheries subsidies text circulated at MC13 on Friday."

분류	2024년 2월 16일 자 협상문안	2024년 3월 1일 자 협상문안
5	D.1. WTO 수산보조금 위원회는 제B.3(a)조에 따른 전환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추가 조항[수산보조금 2단계 협정의 운영을 검토해야 함. 특히 추가 조항의 과잉어획·과잉어획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해야 함. 추가 조항의 목적을 고려하여 동 조항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수정사항을 확인해야 함.	D.1.(a). WTO 수산보조금 위원회는 추가 조항[수산보조금 2단계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추가 조항의 운영을 검토해야 함. 특히 추가 조항의 과잉어획·과잉어획능력, 원양어업 또는 어업 관련 활동, 국가 관할권 밖의 영역에서 실제 또는 예상되는 어업·어업 관련 활동을 조건으로 하거나 이와 연계된 수산보조금 총액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추가 조항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인한 소도서개발국과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켰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함. 추가 조항의 목적과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제14.6항 및 제14.7항을 고려하여 동 조항의 운영을 강화하고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수정사항을 확인해야 함. 이러한 수정에는 주요 보조금 공여국의 보조금에 대한 양적 제한 또는 감축 약속이 포함될 수 있음. 보조금의 총액 또는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영역에서 실제 또는 예상되는 어업·어업 관련 활동을 조건으로 하거나 이와 연계된 보조금 총액이 증가한 경우, WTO 수산보조금 위원회는 다른 조치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양적 제한 또는 감축을 권고해야 함.
6	D.1. WTO 수산보조금 위원회는 검토 결과를 상품무역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그 이후에는 수산보조금 협정 제9.4조에 따른 정기 검토에서 다루어짐.	D.1.(b). WTO 수산보조금 위원회는 검토 결과를 상품무역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검토 결과와 추가 조항의 운영을 강화하거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권고 사항은 검토 종료 이후 열리는 첫 번째 각료회의에서 다루어져야 함. 그 이후에는 수산보조금 협정 제9.4조에 따른 정기 검토에서 다루어짐.

자료: 다음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Ministerial Conference, "Additional Provisions on Fisheries Subsidies – Draft Text," WT/MIN(24)/W/10, 16 February 2024; World Trade Online(2024.3.1.), "Revised WTO fisheries subsidies text circulated at MC13 on Friday," <https://insidetrade.com/sites/insidetrade.com/files/documents/2024/mar/Fish%20draft.pdf>.

2) 주요 쟁점

■ MC13에서는 2024년 3월 1일 자 수산보조금 협상문안을 두고 최종 타결까지 몇 개 조항만을 남겨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특히 (i) 개도국의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을 위한 전환기간, (ii) 강제노동 관련 조항에 이견이 있었음.⁴⁴⁾

■ MC13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된 조항은 개도국 특별대우였음.

- MC13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는 개도국에 공정한 경쟁조건을 보장하고 개도국의 협정 이행을 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도국 특별대우(S&DT) 조항을 두고 회원국 사이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확인됨.
- 특히 개도국의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을 위한 전환기간에 관해 회원국간 이견이 확인됨.
 - 전환기간을 적용받는 개도국·최빈개도국은 보조금 금지의무를 면제받으며, 전환기간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뉨.

44) World Trade Online(2024.4.9.), "New MC13 fisheries text narrows gaps, includes forced labor."

- 첫 번째 전환기간은 최빈개도국(LDC) 지위를 졸업한 회원국에 적용됨. 2024년 3월 1일 자 협상문안 제B.1조에 따르면, 최빈개도국은 OCOF 보조금 금지의무를 적용받지 않음. MC13에서는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하는 회원국의 경우 UN 총회가 해당국의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을 결정한 날로부터 “최대 [X]년 동안” OCOF 보조금 금지의무를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
- 두 번째 전환기간은 최소허용 기준(전 세계 해양 어획량의 0.8%) 이상을 차지하는⁴⁵⁾ 개도국을 대상으로 함. 협상과정에서 인도는 두 번째 경우의 전환기간으로 25년을 주장하였으며, 다른 회원국들은 인도가 제안한 25년이 지나치게 길다는 입장을 개진함. 인도의 전 세계 해양 어획량은 약 4~5%이므로 두 번째 전환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강제노동 관련 조항을 수산보조금 협정에 포함하기를 희망함.

- 미국은 과거 2021년에도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i) 선상 강제노동 사용의 식별, (ii) 강제노동 사용에 관련된 어업활동에 제공되는 보조금에 관한 규칙, (iii) 강제노동 사용이 의심되는 선박 및 운항자에 대한 WTO 통보의무에 관해 제안한 바 있으며, MC13의 제2차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도 선상 강제노동 사용에 관한 추가적인 투명성 요건을 제안함.
- 2024년 3월 1일 자 협정문안에는 “강제노동을 사용했음을 합리적으로 나타내는 정보를 회원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박과 운전자(any vessels and operators for which the Member has information that reasonably indicates the use of forced labour)”를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미국 측 제안이 포함됨.⁴⁶⁾
- 이에 대해 중국은 위 강제노동 조항 삭제를 요구하면서, 개도국 특별대우 조항에 따른 유연성을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함.⁴⁷⁾

라. 농업

■ MC13 농업협상에서는 진전이 없었으며, 농업 이슈에 대한 WTO의 장기적인 협상 방향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

- MC13 전후로 농업 협상문안이 세 차례 수정·회람되었으며, 농업협상의 주요 이슈는 국내보조, 시장접근, 개도국을 위한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SSM), 수출 금지·제한, 수출경쟁, 면화 무역·개발지원,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PSH) 등 7가지임.
- 농업협상 의장이 자신의 책임하에 작성한 2024년 1월 27일 자 비공식 협상문안⁴⁸⁾이 회람된 이래 회원국들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절충한 2024년 2월 16일 자 협상문안⁴⁹⁾이 MC13을 앞두고 회람되었으며, MC13가 진행 중이던 2024년 2월 29일에는 합의가 어려운 부분을 삭제한 협상문안 수정본⁵⁰⁾이 회람됨.

45) 2024년 3월 1일 자 협상문안 제B.2조에 따르면, 0.8% 미만을 차지하는 국가는 협정에 따른 규율을 면제받음.

46) 2024년 3월 1일 자 협상문안, 제C.2조 제(a)항.

47) World Trade Online(2024.3.1.), “New MC13 fisheries text narrows gaps, includes forced labor.”

48)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Unofficial Room Document - Draft Text on Agriculture,” RD/AG/128, 29 January 2024. [제한문서이나 온라인 유출됨]

49)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Draft Text on Agriculture,” WT/MIN(24)/W/13, 16 February 2024.

50) Ministerial Conference, “Draft Text on Agriculture - Revision,” WT/MIN(24)/W/13/Rev.1, 29 February 2024.

- 농업협상 중 일부 이슈를 두고 협상 마지막까지 논의가 있었으나 3월 1일 이른 시각에 이미 컨센서스 도출은 어려워졌으며,⁵¹⁾ 결국 농업협상 관련 사항은 MC13 폐막 세션에 상정되지 않고 최종선언문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 특히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PSH)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첨예한 의견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인도가 주장한 PSH의 영구 해법 채택 제안이 미국 등 선진국의 반대로 무산되자 국내보조 등 농업협상 내 모든 안건에서 합의 도출이 결렬됨.

1) MC13 농업 협상문안의 주요 내용

- MC13에서는 국내보조, 시장접근,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수출 금지·제한, 수출경쟁, 면화무역 및 면화 개발지원,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도(PSH)가 논의됨.
- 최종적으로 MC13에서 논의된 2월 29일 협상문안 수정본은 2월 16일 협상문안에 비해 문구를 간소화했으며, 이행 일정(Timeline of Implementation)이 추가됨.
- [국내보조] 2월 16일 문안의 “무역을 왜곡하는 모든 형태의 보조를 논의하고 분석”⁵²⁾하겠다는 문구가 2월 29일 문안 수정본에서는 삭제됨.
- [시장접근] 2월 16일 문안의 “시장접근 협상에서 관세 간소화, 경사관세, 고관세, 관세정점, 관세할당, 특별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등을 포함한 관세 감축 및 그 밖의 요소를 다룰 수 있다”⁵³⁾는 문안이 2월 29일 협상문안 수정본에서는 삭제됨.
-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2월 16일 문안의 “SSM 관련 상세 주제에 대한 강화된 기술 논의에 참여하는데 합의”⁵⁴⁾와, “일반이사회가 정기적으로 협상의 진행 상황을 검토한다”⁵⁵⁾는 내용이 삭제됨.
- [수출 경쟁] 나이로비 각료결정에 따른 수출경쟁 관련 기존 약속을 효과적으로 이행·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개도국의 역량 제약과 최빈개도국 및 식량순수입 개도국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할 것이 추가됨.⁵⁶⁾
-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2월 16일 문안의 “영구 해법을 위한 협상은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 개도국의 식량안보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프로그램의 국내 식량안보 목표, 제품 범위, 수출 관련 측면을 포함하는 세이프가드 및 우회 방지, 투명성, 법적 확실성 등 모든 관련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감축대상보조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⁵⁷⁾는 내용이 2월 29일 문안 수정본에서는 삭제됨.

51) World Trade Online(2024.3.1.), “No deals on fish, agriculture at MC13; e-commerce moratorium extended.”

52)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Draft Text on Agriculture,” WT/MIN(24)/W/13, 16 February 2024, para. 7.

53) *Ibid.*, para. 12.

54) *Ibid.*, para. 14.

55) *Ibid.*, para. 15.

56) Ministerial Conference, “Draft Text on Agriculture - Revision,” WT/MIN(24)/W/13/Rev.1, 29 February 2024, para. 11.

57)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Draft Text on Agriculture,” WT/MIN(24)/W/13, 16 February 2024, para. 29.

표 5. 2024년 2월 29일 협상문안 수정본의 주요 내용

분류	주제	내용
1	국내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공평한 방식을 통한 무역 왜곡적인 보조의 실질적·점진적인 감축, 무역 왜곡적인 보조가 적은 방향으로의 전환 장려, 회원국이 합의하는 합리적 이행 기간 내 농업협정의 개혁 목표에 따른 규칙 개선을 목표로 국내보조에 관한 협상을 추구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함. • 국내보조 협상은 저소득 또는 자원부족 농가에 대한 보조 등을 포함하여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개도국 특별대우를 유지해야 함.⁵⁸⁾
2	시장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회원국의 시장접근 기회 개선을 위해 시장접근에 대한 보호의, 공정·공평한 방식으로의 실질적·점진적인 축소, 회원국이 합의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농업협정의 개혁 목표에 따른 규칙 개선을 위해 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을 추구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함. • 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은 수출국의 이익과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등 수입국의 민감성을 고려해야 함.⁵⁹⁾
3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C10에서의 나이로비 각료결정(WT/MIN(15)/43-WT/L/978)에 따라 농업협상그룹회의(COA-SS) 전담 세션에서 SSM에 대한 협상을 추구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함.⁶⁰⁾
4	수출 금지·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농업협정 제12조 및 GATT 제11조 제2항 제(a)호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 금지·제한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함. • 그러한 논의는 특히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 개도국의 필요에 주목해야 함.⁶¹⁾
5	수출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투명성 요건 개선방안 모색, 수출경쟁 질의 응답률 제고 노력 등 수출경쟁에 관한 나이로비 각료결정(WT/MIN(15)/45-WT/L/980)의 효과적인 이행 및 모니터링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함. 그 과정에서 개도국의 역량 제약과 최빈개도국 및 식량순수입 개도국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함.⁶²⁾ • 비상업적 거래를 통하는 등 수출보조금 철폐 약속을 우회하는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 신용, 수출신용보증·보험, 농산물 수출 국영무역기업, 국제식량원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함.⁶³⁾ • 최빈개도국 및 식량순수입 개도국에 의한 수출경쟁에 관한 나이로비 각료결정 내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보험, 국제식량원조 관련 조항의 이행 투명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등 최빈개도국 및 식량순수입 개도국의 필요와 상황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주어져야 함.⁶⁴⁾
6	면화 무역·개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화 무역 관련 조치에 관한 협상을 추구하고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면화에 대한 가장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점진적 감축에 노력해야 함.⁶⁵⁾ • 면화 생산·수출 최빈개도국을 위해 시장접근 장벽을 유의미하게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 제안 등을 통해 면화 생산 최빈개도국에 시장을 개방하도록 장려됨.⁶⁶⁾ • 면화 관련 무역조치의 투명성·모니터링 개선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함.⁶⁷⁾ • 면화의 개발 관련 측면이 다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하고,⁶⁸⁾ 면화 및 부산물에서 파생되는 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최빈개도국의 면화 부문을 보다 통합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환영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권장함.⁶⁹⁾
7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P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에 대한 영구 해법을 채택함] 또는 [농업협상그룹회의(COA-SS) 전담 세션에서 PSH에 관한 협상을 추구하고 강화하기로 약속함. 모든 개도국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에 대한 영구 해법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공공비축 제도는 다른 회원국의 무역을 왜곡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⁷⁰⁾

자료: 다음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Ministerial Conference, "Draft Text on Agriculture - Revision," WT/MIN(24)/W/13/Rev. 1, 29 February 2024.

58) Ministerial Conference, "Draft Text on Agriculture - Revision," WT/MIN(24)/W/13/Rev.1, 29 February 2024, para. 7.

59) *Ibid.*, para. 8.

60) *Ibid.*, para. 9.

61) *Ibid.*, para. 10.

62) *Ibid.*, para. 11.

63) *Ibid.*, para. 12.

64) *Ibid.*, para. 13.

65) *Ibid.*, para. 14.

2) 주요 쟁점

- [국내보조 감축] 미국은 모든 형태의 국내보조를 예외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함.⁷¹⁾
 - 아프리카 그룹과 인도는 저소득 및 자원 빈곤 농가를 위한 농업협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개도국에 부여된 ‘정책 공간’이 필요하며, 감축 약속에 개도국 개발보조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함.⁷²⁾
 - 개도국은 회원국들이 합의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감축대상보조를 철폐함으로써 WTO 농업협정상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요구함.
 - 개도국은 선진국에 유리하게 이루어진 UR 협상의 감축대상보조는 모두 철폐되어야 한다는 입장
 - 농산물수출국 입장을 대변하는 케언즈그룹⁷³⁾은 무역을 왜곡하는 모든 국내보조를 감축하자고 주장함.

- [시장접근] 농산물수입국(G10),⁷⁴⁾ EU 등은 시장접근 제안에 반대하며, 협상에서 수입국의 민감성과 식량안보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⁷⁵⁾
 - G10과 EU는 2024년 2월 16일 자 협상문안에 포함된 시장접근 관세감축 요소의 구체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함.⁷⁶⁾
 - 미국은 국내보조와 시장접근 간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생산 및 무역 왜곡조치 감축으로의 전환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 [SSM] 개도국그룹인 G33은 SSM에 대한 개도국 권리를 강조하며, MC14까지 SSM에 대한 결정에 합의하고 채택할 것을 촉구⁷⁷⁾
 - 농산물수출국은 수입이 급증하고 국내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때 일정 수준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SSM이 시장접근 분야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하므로 SSM만의 합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냄.

- [수출 금지·제한] 최빈개도국 그룹은 최빈개도국 및 식량수입 개도국(NFIDC)이 국내 소비를 위해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MC12에서 채택된 식량안보 각료선언⁷⁸⁾에 따라 수출 제한·금지 조치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함.⁷⁹⁾

66) *Ibid.*, para. 15.

67) *Ibid.*, para. 16.

68) *Ibid.*, para. 17.

69) *Ibid.*, para. 20.

70) *Ibid.*, para. 21.

71) Washington Trade Daily(2024.2.5.), “Differences Remain on Agriculture.”

72) *Ibid.*

73) 캐나다,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남아공,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등.

74)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등.

75) Washington Trade Daily(2024.2.5.), “Differences Remain on Agriculture.”

76) Washington Trade Daily(2024.2.19.), “Agriculture Draft Draws Debate.”

77) Washington Trade Daily(2024.3.1.), “Call for PSH Adoption at MC13.”

78) Ministerial Conference,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Emergency Response to Food Insecurity,” WT/MIN(22)/28, WT/L/1139, 22 June 2022.

79) WT/MIN(24)/2, para. 1.4.

■ [PSH] MC13에서는 인도가 주장하는 PSH에 대한 영구해법 마련을 두고 여전히 상당한 입장 차이가 확인됨.

- 2013년 MC9에서 회원국들은 영구해법이 이후 마련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단기적으로 개도국의 공공 비축 제도에 대해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2015년 MC10에서는 PSH의 영구해법 마련에 관한 협상 권한이 위임됨. 2017년까지 합의에 이를 것이 규정되었으나, MC13에서도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임.
- 인도는 PSH에 대한 영구해법 합의 없이는 MC13 농업 협상에서 어떠한 성과도 없을 것임을 강조하였고,⁸⁰⁾ 아프리카 그룹, G33,⁸¹⁾ ACP 그룹 등 다수 개도국이 이에 동조함.
 - 인도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을 위한 국내보조 상한 초과를 허용하는 영구적인 평화조항 마련을 주장
 - 인도의 PSH 프로그램에서는 인도식품공사(FCI)와 같은 정부기관이 쌀, 밀 등 일정 농산물을 최저지원가격 (MSP: Minimum Support Price), 즉 고정가격으로 농민으로부터 구매·비축하여 「국가식량안보법(NFSA: National Food Security Act)」에 따라 빈곤층에게 분배함.⁸²⁾ 인도 입장에서는 PSH에 대한 영구 해결책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국의 PSH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게 되고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 받게 된다는 입장⁸³⁾
- 또한 인도는 식량 보조금 한도를 계산하는 공식을 수정할 것을 제안함. 인도와 같은 개도국들은 PSH에서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외부 참조가격(ERP: External Reference Price)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청해옴. 현행 외부 참조가격은 1986~88년 참조가격에 기초함.⁸⁴⁾
 - WTO 농업협정에 따르면 농업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외부참조가격 기준)은 상품 가치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됨.⁸⁵⁾ 외부 참조가격은 1986~88년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아 낮은 수준으로 산정됨. 그 결과 공여된 보조금이 농업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상한을 초과하게 됨.⁸⁶⁾
- 반면 미국 등 선진국과 일부 개도국들은 최소허용보조를 초과하는 PSH가 무역왜곡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구해법에 반대함.
 - 정부가 고정가격으로 식량을 구매한 이후 공공비축 식량이 국경을 넘어 방출될 경우 무역을 왜곡하고 전 세계 식량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고 주장⁸⁷⁾

■ 농업협상은 2024년 4월 16일에 재개됨.

- 해당 농업위원회 특별회기는 PSH 및 SSM 전담 세션과의 합동 회의로 진행됨.⁸⁸⁾

80) Washington Trade Daily(2024.2.29.), "Agriculture Outcome Tied to PSH."

81) 개도국 입장을 반영하고 특별품목 및 SSM에 중점을 두는 그룹으로서, 중국, 도미니카,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케냐,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튀르키예, 우간다, 베네수엘라 등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및 아프리카와 중미 30개국으로 구성됨.

82) Deccan Herald(2024.4.16.), "A Clause that doesn't buy peace."

83) Diplomatist(2024.3.23.), "India & its Persisting Challenges Amidst the Wrap-Up of the 13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MC13)."

84) IAS Parliament(2022.7.4.), "Issue with Public Stockholding."

85) WTO 농업협정은 품목 특정(PS: Product Specific) 국내보조와 품목 불특정적(NPS: non-product specific) 국내보조를 구분하고, 최소허용보조는 품목 특정적 국내보조의 경우 해당 품목 총생산액의 5% 이하, 품목 불특정 국내보조의 경우 농업총생산액의 5% 이하일 경우 해당 연도 감축대상보조 총액(Current Total AMS) 합계에 산입되지 않음. 개도국의 경우 위 최소허용비율은 5%가 아니라 10%가 적용됨.

86) IAS Parliament(2022.7.4.), "Issue with Public Stockholding."

87) DAWN(2024.3.2.), "Deadlocked WTO talks drag on with no breakthrough."

-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각료회의에서 부결된 협상문안에 기초해서 후속 협상을 지속하지 않고 협상문안 작업을 새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운데,⁸⁹⁾ MC13에서 도출된 협상문안이 후속 농업협상에 어느 범위와 수준으로 활용될 것인지 이번 농업위원회 특별회기 이후의 논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마. WTO 개혁

1) WTO 심의·협상 기능 개선

■ 회원국들은 MC12에서 WTO의 심의 및 협상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에 합의한 바 있음.

- 2022년 MC12의 결과문서⁹⁰⁾에서는 개방되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절차를 통해 WTO의 모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목표로 노력할 것을 약속함. WTO 일반이사회와 그 산하기관에서의 검토를 통해 MC13까지 가능한 개혁안(‘결정’ 형식)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⁹¹⁾

■ MC13에서 회원국들은 WTO의 심의, 협상 및 분쟁해결 기능을 포괄하는 WTO 개혁 프로세스의 진전을 지지함.

- WTO의 심의(deliberation) 기능과 관련하여 MC13을 앞두고 회원국간에 ‘행동에 의한 개혁(reform by doing)’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 즉 WTO 기관의 ‘일상적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⁹²⁾
- MC13에서는 (i) WTO 이사회, 위원회 및 협상 그룹의 기능을 개선하고, (ii) WTO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며, (iii) WTO 작업에의 회원국 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회원국들이 ‘행동에 의한 개혁’ 프로세스를 지속하고 MC14에서 진전 상황을 보고할 것에 합의가 이루어짐.

■ WTO 심의의 대상으로서, 회원국의 산업정책과 지속가능발전, 포용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각료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짐.

- MC13은 공식 협상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별도의 ‘각료 대화(ministerial conversation)’ 세션을 개최하여 회원국간에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최초의 각료회의임.
- MC13 협상 첫날인 2024년 2월 26일에 (i) 무역과 산업정책,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공간을 포함하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⁹³⁾ (ii) 무역과 포용⁹⁴⁾을 주제로 두 건의 각료 대화가 진행됨.
- 일부 회원국은 무역 및 산업정책(즉 ‘보조금’)에 대한 다자간 논의를 정례화하기 위해 임시 작업반 설치를

88) Third World Network Berhad(2024.4.4.), “WTO: Agriculture chair to jumpstart negotiations after MC13 failure,” TWN Info Service on WTO and Trade Issues(Apr24/07).

89) Third World Network Berhad(2024.3.22.), “WTO: DG yet to come to terms with MC13 failure,” TWN Info Service on WTO and Trade Issues(Mar24/13).

90) MC12 Outcome Document, adopted on 17 June 2022, WT/MIN(22)/24, WT/L/1135, 22 June 2022.

91) *Ibid.*, para. 3.

92) WTO news item(202310.24.), “Senior Officials Meeting Paves Way for Progress on Deliverables at MC13.”

93)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Trade and Industrial Policy and Policy Space for Industrial Development.”

94) “Trade and Inclusion.”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나, 회원국의 컨센서스를 확보하지 못하여 MC13 결과문서에는 반영되지 않음.

2) 분쟁해결제도 개혁

■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는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놓여 있음.

- 미국은 2019년 12월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이후로도 여전히 신규 상소기구 위원의 선출 절차를 저지하고 있음.
-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절차는 여전히 시행 중이나,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로 인해 WTO의 집행 메커니즘의 실효성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임.
- 복수국간 중재 형식인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을 통해 상소심을 한시적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일부 회원국이 활용하고 있기는 하나, 나머지 회원국의 통상 분쟁에서는 여전히 상소 제기 시 WTO 분쟁해결절차가 실질적으로 중단되게 됨.

■ MC13에서의 분쟁해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는 2024년 말까지 분쟁해결제도를 완비하기로 한 MC12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데 그침.

- 2022년 6월 MC12에서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는 '완전하게 기능하는 분쟁해결제도를 복원할 것'에 합의하였고, MC13에서는 그간의 논의 진전을 점검함.
- MC13에 앞서 2024년 2월 16일 일반이사회 특별회기에서는 제네바 주재 회원국 관료들이 참여하는 '비공식적 프로세스(Informal Process)'의 결과물로서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에 관한 초안이 회람되기도 함.
- MC13에서 채택된 분쟁해결제도 개혁에 관한 각료결정⁹⁵⁾에서는 회원국들이 포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규정하고 상소심, 접근성 등 미해결 사안에 대한 작업을 지속하고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WTO 분쟁해결제도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함.⁹⁶⁾
- 다만 분쟁해결제도 개혁 작업 기한으로서 각료결정에 기술된 2024년 12월은 MC13에서 새롭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2022년 MC12에서 결정된 기한이라는 점에서, 크게 유의미한 결정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움.
 - 160개 이상의 회원국이 각료결정에서 합의한 것 이상의 문구를 희망하였으나, 미국이 해당 문구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인해 최종 결과문서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EU를 포함한 일부 회원국은 WTO 패널 판정을 두고 현재 기능정지 상태인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함으로써 WTO 분쟁해결절차 자체를 마비시키는('into the void')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결과문서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하였으나, 미국 등 일부 회원국이 동의하지 않음.⁹⁷⁾

■ MC13 이후 분쟁해결제도 개혁 비공식 프로세스를 위한 새로운 촉진자(facilitator) 임명에 관한 협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시됨.

- DSB 의장은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회원국의 3분의 2를 대표하는 31명의 대표단과 협의를 가짐.

95) Ministerial Conference, "Dispute Settlement Reform - Ministerial Decision," WT/MIN(24)/37, WT/L/1192, 4 March 2024.

96) *Ibid.*, para. 4.

97) World Trade Online(2024.3.1.), "No deals on fish, agriculture at MC13; e-commerce moratorium extended."

- 협의 후 DSB 의장은 가장 많이 거론된 세 명의 후보에게 접근하였으나,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기존 계획 일정대로 3월 21~22일 일반이사회 정례회의에서 새로운 촉진자 임명 건을 상정하지는 못함.⁹⁸⁾

바. 복수국간 이니셔티브

- WTO 회원국들이 수산보조금과 농업 등 주요 협상을 두고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체 회원국이 아닌 뜻을 같이하는(like-minded) 회원국 사이의 복수국간 이니셔티브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현재 대다수⁹⁹⁾ 회원국이 하나 이상의 복수국간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중소·중견 기업(MSMEs)에 관한 규율, 무역과 젠더 등 다양한 분야가 JSI 형식으로 논의 중이며, 투자원활화와 서비스 국내규제 등 2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됨.

표 6. 주요 WTO 복수국간 이니셔티브와 참여 현황

분류	출범 시기	주제	참여 WTO 회원국 수
1	2017 (MC11)	전자상거래	90
2		서비스 국내 규제(SDR)	72
3		투자원활화(IFD)	128
4		중소·중견 기업(MSMEs)	98
5		성평등 및 무역에서의 여성	128
6	2021 (제네바)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	76
7		플라스틱 오염과 환경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무역 대화(DPP)	78
8		화석연료 보조금(FFSR)	48

주: EU 및 EU의 27개 회원국은 27개 참여 회원국으로 계산함.

자료: 다음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WTO, "Joint Initiative on E-commerce"(2023.10. 기준); WTO, "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2024.4. 기준); WTO,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2024.3. 기준); WTO, "Informal Working Group on MSMEs - Members of the Group - Revision," INF/MSME/2/Rev.11, 30 March 2023(2023. 3.30. 기준); WTO, "Informal Working Group on Trade and Gender"(2023.5. 기준); WTO,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2024.4. 기준); WTO, "Plastics pollution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lastics trade"(2024.2. 기준); WTO, "Fossil fuel subsidy reform"(2024.4. 기준).

1) 서비스 국내 규제

- MC13에서는 서비스 국내 규제(SDR: Services Domestic Regulation)에 관한 복수국간 합의의 발효¹⁰⁰⁾가 발표됨.
-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이니셔티브는 2017년 MC11에서 출범, 2021년 12월에 협상이 완료되어 서비스 국내 규제 협상 타결에 관한 선언¹⁰¹⁾이 채택됨.

98) WTO news item(2024.3.19.), "Chair briefs members on consultations regarding post-MC13 dispute settlement reform work."

99) 2024년 2월 26일 기준, 총 152개 회원국이 하나 이상의 WTO 복수국간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복수국간 이니셔티브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회원국은 방글라데시, 쿠바, 이집트, 가나, 인도, 요르단, 네팔, 파키스탄, 남아공, 스리랑카, 탄자니아, 튀니지 등 12개 회원국임.

100) '발효'라고 기술하는 것은 엄밀하게 정확한 표현은 아님.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새로운 규칙(서비스 국내 규제 참조문서에 규정된 내용)은 WTO 협정 내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회원국이 자국의 GATS 서비스 양허표에 반영(추가 기재)하여 이행하는 형식이기 때문임.

101) WTO, "Declaration on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s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WT/L/1129, 2 December 2021.

-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참여 회원국의 서비스 양허표 수정 인증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 요구되어 2024년 2월 27일에 GATS 서비스 양허표 수정 인증 절차가 마무리된, 72개 참여 회원국 중 4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효됨.
- 신설된 서비스 국내 규제 규칙(이하 'SDR 규칙' 또는 '서비스 국내 규제 참조문서')¹⁰²⁾은 서비스 국내 규제 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하여 무역 비용을 낮춤으로써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라이선스 요건, 기술 표준, 자격 요건 관련 조치로 인한 무역제한 효과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GATS 또는 그 밖의 WTO 협정에 따른 기존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GATS 양허표에 동 규칙을 기입한 WTO 회원국만을 구속함.
- 최혜국대우 원칙이 적용되므로 서비스 국내규제 JSI에 참여하지 않은 WTO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업자라 하더라도 동등하게 혜택을 받음.
- 우리나라, 미국, EU, 중국 등 전 세계 서비스 무역의 92.5%를 차지하는 72개 WTO 회원국(이하 '참여 회원국')¹⁰³⁾이 참여 중이며,¹⁰⁴⁾ 서비스 국내 규제 규칙의 발효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무역비용을 1,250억 달러 이상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¹⁰⁵⁾
- WTO 체제 내에서 서비스 공급 허가 관련 성평등 의무가 규정된 최초 사례라는 점에도 의의가 있음.

■ 참여 회원국들은 SDR 규칙을 자국의 GATS 서비스 양허표에 반영하여 이행하기로 결정함.

- SDR 규칙은 참여 회원국이 자국의 GATS 서비스 양허표에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등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을 기재(즉, 양허)한 서비스 부문에 적용됨.
- SDR 규칙은 참여 회원국의 GATS 서비스 양허표에 기존에 기재된 구체적 약속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각국 GATS 서비스 양허표의 '추가적 약속(Additional Commitment)'란에 기재하기로 함.¹⁰⁶⁾
- 이러한 이행 방식은 서비스 국내 규제 JSI의 협상 결과를 WTO 협정에 직접 추가하는(WTO 협정 개정) 경우와 달리 WTO 회원국 전체의 컨센서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점이 있음.

■ 다만 상기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회원국이 참여 회원국의 GATS 서비스 양허표 수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2000년 4월 14일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채택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정정 또는 수정에 대한 인증 절차'¹⁰⁷⁾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의 GATS 서비스 양허표를 수정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들에 통보

102) WTO, "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 Reference Paper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INF/SDR/2, 26 November 2021.

103)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바레인왕국,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모로,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유럽연합,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홍콩, 중국,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공화국,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평후, 진먼 및 마츠의 별도 관세 지역, 태국, 동티모르,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연합, 영국, 미국, 우루과이. WTO, "Informal Discussions - 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104) WTO(2022.7.), "Factsheet: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 Rationale and Content, Potential Economic Benefits, and Increasing Prevalence in Trade Agreements."

105) WTO news item(2024.2.27.), "New disciplines on good regulatory practice for services trade enter into force."

106) GATS 제18조(추가적 약속)는 WTO 회원국이 자격, 표준, 라이선스에 관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협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속은 회원국의 양허표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이후 WTO 사무총장의 인증(certification)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이 과정에서 다른 모든 WTO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인증 발급에 이의(objection)를 제기할 수 있음. 사무총장에게 이의 제기 시 인증절차가 보류됨. 다만 이의 제기는 오로지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함.

표 7. GATS 서비스 양허표 수정 절차(S/L/84)

분류		내용
1	양허표 수정 회원국의 WTO 통보	• 인증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모든 회원국에 회람될 수 있도록 WTO 사무국에 그러한 취지의 통보를 제출해야 함. ¹⁰⁸⁾
2	이의 제기 회원국과의 협의	• 이의 제기 회원국과 양허표를 수정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하게 협의를 개시 •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만족스러운 문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¹⁰⁹⁾
3	이의의 효력 존속 기간	• 이의가 통보된 경우, 인증 절차는 이의 제기 회원국이 이의 제기를 철회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됨. ¹¹⁰⁾
4	이의 제기의 철회 및 종료	• 이의 제기의 철회는 WTO 사무국에 전달되어야 함. ¹¹¹⁾ • 이의가 두 번 이상 제기된 경우, 인증 절차는 모든 이의 제기 회원국이 이의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만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됨. ¹¹²⁾

자료: 다음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Procedures for the Certification of Rectifications or Improvements to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S/L/84, 18 April 2000.

■ 인도와 남아공은 일부 참여 회원국의 GATS 양허표 수정을 두고 이의를 제기함.

- 2023년 2월에 인도와 남아공은 의견서(Communication) 형식의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여 서비스 국내 규제 JSI에 따라 35개 참여 회원국이 제출한 GATS 양허표 수정본의 인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다수의 참여 회원국들은 서비스 양허표 수정본에 서비스 국내 규제 참조문서를 인용하고 그 링크만을 기재하였으나, 이러한 양허표 기재 방식에 인도와 남아공이 이의를 제기한 것임.
- EU는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인도, 남아공과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른 양허표 재수정 방식을 2024년 1월 24일의 서비스 국내 규제 작업반 회의에서 공유함.
- 인증이 완료된 GATS 양허표 수정본은 실제적 내용이 변경되었다기보다는 인도, 남아공과의 협의에 따라 주로 표현상의 변화가 있었음(표 8 참고).
 - 인도와 남아공이 이의를 제기한 '참여 회원국의 양허표 수정안'에서는 2021년 11월 26일 자 서비스 국내 규제 참조문서의 내용을 양허표에 직접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참조문서를 단순 인용할 뿐이었음. 반면 인증이 완료된 양허표의 경우 참조문서의 내용을 양허표에 직접 기재하였음.
 - 인도와 남아공은 서비스 국내 규제 JSI를 포함한, 일부 회원국만의 모든 복수국간 협상에 원칙적으로 반대해

107)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Procedures for the Certification of Rectifications or Improvements to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S/L/84, 18 April 2000.

108) S/L/84 제2항 제1문.

109) S/L/84 제2항 제3문.

110) S/L/84 제2항 제4문.

111) S/L/84 제2항 제5문.

112) S/L/84 제2항 제6문.

왔으므로 SDR 규칙을 반영하는 양허표 수정본에 대한 인증이 복수국간 협정을 지지하는 선례가 아니라는 점을 양허표 수정본에 기입하도록 하여 서면으로 보장받은 이후에야 반대를 철회함.

표 8. 인도·남아공의 이의 제기 사항을 반영한 GATS 서비스 양허표 재수정본의 주요 변경사항

분류	양허표상 위치	변경사항
1	자국이 양허한 서비스 부분의 '추가적 약속' 란	'협상이 타결된 참조문서' 대신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규칙(Disciplines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으로 기술
2		서비스 국내 규제 참조문서(INF/SDR/2)를 양허표에 인용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국내 규제 참조문서 본문 전체 내용을 양허표에 직접 기재
3	서비스 양허표 정정문서(Corrigendum)의 커버 페이지	[SDR에 관한] 새로운 약속의 인증이 다른 복수국간 협정의 선례가 되지 않음을 추가 기재
4		[SDR에 관한] 새로운 약속은 비참여 WTO 회원국의 권리를 축소시키거나 의무를 변경할 수 없음을 추가 기재

자료: 본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 EU와 인도, 남아공은 서비스 국내 규제 JSI에 참여한 다른 참여 회원국들도 EU와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이미 인증을 받은 참여 회원국들의 경우 그러한 방식을 취한 상태였음), 인도와 남아공이 이의 제기를 철회하는 데 이해를 같이하였다고 설명함.
- 또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정정 또는 수정에 대한 인증 절차'상 GATS 양허표 수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인도와 남아공이 이의 제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음(표 7의 3번 참고). 결국 일부 회원국의 GATS 양허표 수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철회하여 인증이 완료된 상태임.
 - 이의를 제기받은 참여 회원국이 상기 방식대로 서비스 양허표를 재수정함에 따라, 남아공은 2월 16일에 54개 회원국의 27개¹¹³⁾ 서비스 양허표 수정에 대해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표, 3월 28일에는 한국 포함 4개 회원국¹¹⁴⁾에 대한 이의 철회를 추가 발표¹¹⁵⁾
 - 인도 역시 MC13 협상 첫날에 동일한 27개 서비스 양허표에 대해 이의 철회를 발표함. 이로써 53개 WTO 회원국의 26개 서비스 양허표 수정본에 대한 인증이 완료되었고, MC13에서 응고지 WTO 사무총장과 참여 회원국들은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새로운 규칙의 '발효'를 선언함.

■ 현재 참여 회원국 중 16개 참여 회원국의 GATS 서비스 양허표는 인도, 남아공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여 비인증 상태로 남아 있음.

- 다만 참여 회원국은 자국 서비스 양허표에 대한 인증이 완료되기 이전에도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이행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음.

113) 아르헨티나, 바레인, 칠레, 중국, 코스타리카, 유럽연합(EU 및 27개 회원국),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카자흐스탄,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몰도바,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라과이, 페루,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WTO, "Communication from South Africa - Withdrawal of Objections on Requests for Certification of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S/L/482, 16 February 2024, p. 1.

114) 알바니아, 캐나다, 조지아, 한국. WTO, "Communication from South Africa - Withdrawal of Objections on Requests for Certification of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S/L/537, 28 March 2024, p. 1.

115) WTO, "Communication from South Africa - Withdrawal of Objections on Requests for Certification of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S/L/537, 28 March 2024.

- 인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16개 회원국 중 영국의 경우, 인도와 남아공 외에 EU 탈퇴(브렉시트)와 관련하여 러시아가 영국의 양허표 수정본 인증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여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 o 인도와 남아공은 영국에 대한 이의 제기를 철회했으나, SDR 규칙과는 별개로 브렉시트 이후의 서비스 양허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함. 러시아는 2018년 12월 WTO에 제출된 영국의 서비스 양허표 수정안¹¹⁶⁾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옴.¹¹⁷⁾
 - o 영국은 인증 절차 진행 중에도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겠다고 발표¹¹⁸⁾

2)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이하 'IFD') JSI는 128개 WTO 회원국이 참여하는 WTO 내 최대 규모의 복수국간 이니셔티브임.

- IFD 협정은 최혜국대우에 기반한 복수국간 협정으로서 등 협정을 수락한 회원국에만 구속력이 있으며, 모든 WTO 회원국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음.
 - o 현재 85개 이상의 참여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이며, 그중 25개국이 최빈개도국임.¹¹⁹⁾
- IFD 협정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투자유치국의 자국 내 법·규정을 간소화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o 이를 위해 투명성 촉진(제2절), 행정절차의 간소화·신속화(제3절), 국내 규제일관성 개선 및 국경간 협력 장려(제4절), 개도국 특별대우(S&DT)(제5절), 지속가능투자 촉진(제6절)에 관해 규정
- IFD 협정을 수락한 회원국에는 75번째 회원국의 수락서가 WTO에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에, IFD 협정이 발효한 이후 IFD 협정을 수락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수락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에 해당 회원국에 대해 발효할 예정임.¹²⁰⁾

표 9. IFD 복수국간 이니셔티브 협상 일지

분류	일시	내용
1	2017. 1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개 참여 회원국, 제1차 공동 각료성명 발표¹²¹⁾ • IFD에 관한 다자간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구조화된 논의 촉구
2	2019. 1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개 참여 회원국, 제2차 공동 각료성명 발표¹²²⁾ • 상품·서비스 관련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협정을 고안하고 MC12에서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

116)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Certification of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S/C/W/380, 3 December 2018;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Certification of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 Corrigendum," S/C/W/380/Corr.1, 13 December 2018.

117) WTO, "Communicat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 Notification of Objection to the United Kingdom's Request for Certification of its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S/L/423, 17 January 2019; WTO, "Communicat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 Notification of Objection to the United Kingdom's Request for Certification of its List of Article II (MFN) Exemptions," S/L/424, 17 January 2019.

118) *Ibid.*

119) WTO,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120) IFD 협정 제45조 제1항.

분류	일시	내용
3	2020. 9	• 공식 협상 개시
4	2023. 7. 6	• 협정문 문안 협상 실질적 완료
5	2023. 11. 27	• IFD 협정문 ¹²³⁾ 최종 타결 • 이후 2023년 11월 27일 자 협정문 영문본에 대한 법률 검토 및 IFD 협정의 불어·서어본 문안 작업 완료 ¹²⁴⁾
6	2024. 2. 13	• IFD 협정 영어·불어·서어본의 언어별 일관성 검토를 거쳐 2024년 2월에 세 개 WTO 공식 언어로 규정된 협정문 최종 확정 ¹²⁵⁾

자료: 본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 2023년 7월 6일에 협상 타결을 발표하였을 당시에는 IFD 협정이 WTO 설립협정 부속서 1에 귀속되는 완전한 다자협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협상 타결이 발표된 2023년 7월 6일자 협정문¹²⁶⁾에는 동 협정의 당사자를 ‘Members/Parties’로 병기하여 IFD 협정이 다자협정이 될 가능성을 남겨 두었음.
 - IFD 협정이 WTO 다자협정이 될 경우 최종적으로 유지되는 표현은 ‘WTO 회원국(Members),’ 복수국간 협정이 될 경우 ‘당사국(Parties)’이 될 것임.
- 그러나 2023년 10월에는 WTO 설립협정 부속서 4에 투자원활화협정을 편입하기 위한 복수국간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2023년 11월에 회람된 최종 협정문에는 ‘당사국’ 표현만이 남음.
- 이후 2023년 12월 4일에 회람된 공동 의장국들(한국·칠레)의 의견서¹²⁷⁾에는 ‘MC13에서 참여 회원국들은 IFD 협정의 부속서 4 편입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IFD 협정의 WTO 협정 편입은 WTO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WTO 협정에 복수국간 협정의 신규 편입을 추진하는 것임.

■ MC13 개막에 앞서 2024년 2월 25일에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의 (당시) 123개 참여 회원국들은 협정 최종 타결을 공식화하고 공동 각료선언을 발표함.

- 참여 회원국들은 MC13 개막 전날 협정문을 발표하고 동 협정을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 4에 편입하는 내용의 각료결정 초안¹²⁸⁾을 마련하였으나, MC13에서 사안을 공식 의제로 상정하지는 않음.

121) Ministerial Conferenc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n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WT/MIN(17)/59, 13 December 2017.

122) WTO,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n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 Revision,” WT/L/1072/Rev.1, 22 November 2019.

123) WTO, “Negotiations on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IFD) Agreement,” INF/IFD/W/52, 27 November 2023. [제한문서이나 온라인 유출됨]

124) Third World Network Berhad(2023.12.12.), “WTO: Investment Facilitation surfaces as a plurilateral deal at GC,” TWN Info Service on WTO and Trade Issues(Dec 23/06).

125) WTO, “Structured discussions on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Agreement,” INF/IFD/W/55, 13 February 2024. [제한문서이나 온라인 유출됨]

126) WTO, “Negotiations on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IFD) Agreement,” INF/IFD/RD/136, 6 July 2023. [제한문서이나 온라인 유출됨]

127) General Council, “Information on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 Adding the Agreement on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IFD) into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 Communication from Chile and the Republic of Korea,” JOB/GC/373, 4 December 2023. [제한문서이나 온라인 유출됨]

- IFD 협정의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편입에는 모든 WTO 회원국의 컨센서스가 필요한 가운데,¹²⁹⁾ 인도가 MC13을 앞두고 IFD 협정의 WTO 체제 편입에 반대한 것이 변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2023년 12월 13~15일의 일반이사회 정례회의에서 인도는 IFD 협정의 WTO 편입안이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2023년 12월 21일에 자국의 입장을 담은 별도의 성명서¹³⁰⁾를 회람함.

■ MC13에서는 IFD 협정을 부속서 4에 편입하려는 요청이 공식 상정되지 않았으므로, 다자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보기는 어려움.

- 2024년 3월 21~22일에 개최되었던 일반이사회 정례회의가 MC13 이후 IFD의 편입에 관해 WTO 회원국들과 다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참여 회원국들은 MC13에서 작성하였던 IFD 협정의 부속서 4 편입에 관한 각료결정 초안을 일반이사회 결정 초안(WT/GC/W/927)¹³¹⁾의 형태로 변경하여 일반이사회에 재제출함.

■ MC13에서는 인도가 IFD 협정의 WTO 체제 편입에 반대하는 유일한 회원국이었던 반면, 일반이사회에서는 인도와 함께 남아공, 튀르키예가 IFD 협정의 WTO 체제 편입에 반대함.

- 2024년 3월 22일 일반이사회 정례회의에서는 36개 비참여 WTO 회원국 중 이들 3개국만이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반대함.
 - 일반이사회에서 인도는 투자원활화 협정이 복수국간 협상이고 WTO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는 투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함.
 - 남아공은 WTO 설립협정 제10조 제9항¹³²⁾에 근거해 복수국간 협정을 WTO 협정의 부속서로 포함한 전례가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 튀르키예는 투자원활화협정이 '투자'를 정의하지 않았고, 해당 조항이 다른 WTO 협정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반대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함.
- 이에 대해 일부 참여 회원국의 반발이 있었음.
 - 홍콩은 아부다비에서 편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고, 투자는 WTO의 권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도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
 - 중국은 일반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담 프로세스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으며, 여러 참여 회원국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2024년 3월 21일 일반이사회에서는 MC13의 전반적인 평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소수 회원국이 컨센

128) Ministerial Conference, "Draft Ministerial Decision on Adding the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Agreement to Annex 4 of the WTO Agreement - Communication from the Members Parties to the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Agreement," WT/MIN(24)/W/25, 29 February 2024.

129) WTO 설립협정 제10조 제9항.

130) General Council, "Statement by India on Agenda Item 18 - General Council Meeting - 13-15 December 2023 Communication from India," WT/GC/262 21, December 2023.

131) General Council, "Incorporation of the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Agreement into Annex 4 of the WTO Agreement - Communication from the Members Parties to the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Agreement," WT/GC/W/927, 8 March 2024.

132) "각료회의는 특정 무역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전적으로 컨센서스에 의해서만 동 협정을 부속서 4에 추가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각료회의는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동 협정을 부속서 4로부터 삭제할 수 있다."

서스 도출을 저지하여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

- 특히 소수의 회원국이 컨센서스 도출을 계속 방해할 경우 해당 이의제기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이의제기의 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다른 회원국들과 여론의 압박을 높여 ‘이의제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높이는(raise the cost of objecting)’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짐.¹³³⁾

3) 무역과 환경

■ MC13에서 회원국들은 다양한 그룹으로 나뉘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의 무역 관련 측면을 다루기 위한 제안을 개진함.

- WTO 내에서 진행 중인 ‘무역과 환경’ 관련 복수국간 이니셔티브로는 (i) 기후에 관한 통상장관 연합 (Coalition of Trade Ministers on Climate, 이하 ‘기후무역장관연합’), (ii) 플라스틱 오염과 환경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무역 대화(DPP: Dialogue on Plastics Pollution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lastics Trade), (iii)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FFSR: Fossil Fuel Subsidy Reform) 이니셔티브, (iv)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 협의체(TESSD: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가 있음.

■ [기후무역장관연합]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WTO에서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무역정책에 대한 포괄적 대화를 구체화할 것을 촉구함.

- 2023년 1월 출범한 기후무역장관연합은 60여 명의 통상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금융·무역 분야 간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이행을 추진해 왔음.
- MC13 개막 전 날인 2월 25일 기후무역장관연합에서는 MC13에서 채택될 선언문에 “아심차고 구체적인 미래 지향적인 약속”을 포함할 것을 회원국들에 촉구함.¹³⁴⁾
- 또한 연합의 우선순위 이행을 위해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취할 8가지 자발적 약속¹³⁵⁾을 발표하였으며, 우선순위에는 기후 목표를 추구하는 무역정책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가 포함됨.
- WTO뿐만 아니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나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무역 분야의 역할을 강조하고, 금융·기후 장관들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무역정책이 탈탄소화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DPP]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방지를 위한 무역정책 조치와 친환경 대체재 교역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회원국간 경험 공유와 실질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함.¹³⁶⁾

- 호주, 바베이도스, 중국, 에콰도르, 피지, 모로코가 공동의장국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78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이니셔티브임.

133) Trade β Blog(2024.3.23.), “Setback for plurilateral approach as investment deal blocked again.”

134) World Trade Online(2024.2.25.), “Climate coalition trade ministers call for concrete commitments in MC13 declaration.”

135) Coalition of Trade Ministers on Climate, “Menu of Voluntary Actions.”

136) Ministerial Conference, “Dialogue on Plastic Pollution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lastics Trade (DPP) - Ministerial Statement on Plastic Pollution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lastics Trade,” WT/MIN(24)/14, 23 February 2024.

- WTO 체제 내에서 무역 관련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교역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플라스틱 가치사슬 전반의 무역 흐름에 대한 투명성·모니터링·이해를 제고하고, 개도국의 무역 관련 역량 강화 및 기술지원 수요에 대응하며, 유해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저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적·효율적인 무역정책을 촉진하고, 플라스틱 대체재, 서비스 기술 등의 교역 활성화 방안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함.

■ [FFSR] WTO 차원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관련 정보 공유와 논의를 활성화하고, 점진적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함.¹³⁷⁾

- FFSR 이니셔티브에는 알바니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EU, 피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 사모아, 스위스, 통가, 영국, 우루과이, 바누아투 등 48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 FFSR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유해한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합리화하고 폐지하는 데 있음.
- MC12 이후 회원국들은 (i) 투명성 제고, (ii) 위기대응조치 점검, (iii) 유해보조금 식별 및 개혁 등 3대 분야에서 작업을 진행해왔음.
- 주요 진전사항으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무역정책검토(TPR)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도입된 일시적 보조금 조치의 설계·점검·단계적 철회 등에 관한 경험 공유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 등이 대표적임.
- 유해 화석연료 보조금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경로를 모색하며, 단계적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합의함.

■ [TESSD] MC13에서 (i) 무역 관련 기후조치, (ii) 환경 상품·서비스, (iii) 순환 경제, (iv) 환경 보조금의 설계 및 투명성 등 4개 분야에서의 논의 경과를 공유함.¹³⁸⁾

- 무역과 환경 연계 이슈에 대한 포괄적 논의체로서 현재 76개 회원국이 참여 중임.
- MC12 이후 TESSD의 4개 실무그룹별로 구체적 성과(회원국 모범 관행 및 경험 공유, 상품·서비스 목록화, 주요 무역장벽 파악 등)를 도출함.

표 10. TESSD의 4개 실무그룹별 성과

분류	실무그룹	활동내용
1	무역 관련 기후조치(TrCM) 실무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관련 기후조치(TrCM: trade-related climate measures) 도입 과정에서의 회원국 경험과 모범 관행을 공유하고, 투명성 제고, 정책도입 전 영향 평가, 이행 후 점검, 정책 설계 시 고려사항 등 규제 협력 요소를 도출함.¹³⁹⁾

137) Ministerial Conference, "Ministerial Statement on Fossil Fuel Subsidies," WT/MIN(24)/19, 26 February 2024.

138) Ministerial Conference,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 (TESSD) - Statement by the TESSD Co-convenors," WT/MIN(24)/11, 19 February 2024; Ministerial Conference,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 (TESSD) - Statement By The TESSD Co-convenors - Addendum," WT/MIN(24)/11/Add.1, 19 February 2024.

139) Ministerial Conference,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 (TESSD) - Statement by the TESSD

분류	실무그룹	활동내용
2	환경 상품 및 서비스 실무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상품 및 서비스(EGS)의 범위 설정 • 자유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EGS가 기여하는 목적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EGS 품목을 식별하는 방안에 기반해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등)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예시 목록을 도출하고 해당 EGS의 교역을 저해하는 무역장벽, 공급망 병목 현상을 식별함.¹⁴⁰⁾
3	순환경제 실무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경제와 관련된 무역 이슈를 제품의 전 과정(life-cycle)에 걸쳐 파악하고 체계화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회원국들의 관련 정책과 인센티브 모범 사례 공유 • 제품 생애주기 전반(자원효율적 설계, 재제조, 재활용)에 연계된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현황과 장벽을 검토하고 관련된 투명성, 표준, 무역원활화, 개도국 지원 이슈를 논의함.¹⁴¹⁾
4	보조금 실무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의 농업 및 저탄소 경제 전환 관련 보조금의 설계 경험과 고려사항을 공유 • 보조금의 무역 영향 평가와 WTO 규범 합치성 제고방안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고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보 개선,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제안함.¹⁴²⁾

자료: 다음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WT/MIN(24)/11, WT/MIN(24)/11/Add.1, WT/MIN(24)/11/Add.2, WT/MIN(24)/11/Add.3, WT/MIN(24)/11/Add.4, WT/MIN(24)/11/Add.5,

사. 개도국 특별대우

- MC13에서는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하는 회원국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함.
 - WTO 내 12개¹⁴³⁾ 최빈개발국이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할 예정이므로, MC13에서의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 전환 관련 협상은 특히 중요했음.
 - 최빈개도국은 WTO 다자무역협정 또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등 다른 회원국의 일방적 조치를 통해 다른 개도국이나 선진국은 받지 못하는 일정한 지원조치와 특별조항을 적용받음.
 - 그러나 해당국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하게 되는데, 졸업 이후에도 여전히 지원조치나 특혜 없이 경제발전을 이룰 역량이 없는 경우가 지적되어 옴.
 - 2022년 12월에 최빈개도국 그룹(LDC Group)은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하는 회원국의 원활한 전환에 관한 의견서¹⁴⁴⁾를 WTO에 제출함.
 - MC13 각료결정에서는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 회원국을 위한 전환지원 조치 기간을 졸업일로부터 3년으로 결정하였으며, 최빈개도국 그룹의 제안에 대해서는 [표 11]과 같이 결정됨.

Co-convenors - Addendum," WT/MIN(24)/11/Add.2, 19 February 2024.

140) Ministerial Conference,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 (TESSD) - Statement by the TESSD Co-convenors - Addendum," WT/MIN(24)/11/Add.3, 19 February 2024.

141) Ministerial Conference,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 (TESSD) - Statement by the TESSD Co-convenors - Addendum," WT/MIN(24)/11/Add.4, 19 February 2024.

142) Ministerial Conference,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 (TESSD) - Statement by the TESSD Co-convenors - Addendum," WT/MIN(24)/11/Add.5, 19 February 2024.

143) MC13에서 코모로와 동티모르의 가입으로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해야 하는 WTO 회원국이 10개에서 12개로 늘어남.

144) General Council, "Trade Related Challenge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Way Forward: Proposal for WTO Smooth Transition Measures in Favour of Countries Graduated from the LDC Category - Communication from Djibouti on Behalf of the LDC Group - Revision," WT/GC/W/807/Rev.2, 6 December 2022.

표 11. 최빈개도국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 관련 LDC 그룹 제안 및 MC13 결정사항

분류	LDC 그룹 요청사항	MC13 각료결정
1	DSU, TRIPS 협정, 농업 협정, 무역원활화 협정, 수산보조금 협정상의 일정 의무, 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정 웨이버,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 관련,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한 회원국에 대해 졸업 후 일정 기간 특혜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 ¹⁴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DC 그룹 의견서 부록 1에 열거된 WTO 협정 및 결정¹⁴⁶⁾에 따른 최빈개도국 특혜 중 분쟁해결양해 제24조의 최빈개도국 관련 특별절차 적용에 관한 결정만 이루어짐. 각료결정에 따라, MC13 이후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하는 회원국은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한 날로부터 3년 동안 DSU 제24조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특별절차의 혜택을 받게 됨.¹⁴⁷⁾
2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 회원국이 적절한 기간 동안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MC13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 ¹⁴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 후 3년 동안 기술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유지하여, 기술지원 및 훈련계획(TATP: 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Plan)에 따른 맞춤형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함.¹⁴⁹⁾
3	WTO 보조금협정 관련,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 회원국을 수출보조금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원국 범주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 ¹⁵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MC13 각료결정에서는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 회원국의 WTO 보조금협정상 재분류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음.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2024년 12월까지 지 권고 시한을 설정함.¹⁵¹⁾

자료: 다음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General Council, "Trade Related Challenge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Way Forward: Proposal for WTO Smooth Transition Measures in Favour of Countries Graduated from the LDC Category - Communication from Djibouti on Behalf of the LDC Group - Revision," WT/GC/W/807/Rev.2, 6 December 2022; Ministerial Conference, "WTO Smooth Transition Support Measures in Favour of Countries Graduated from the LDC Category - Ministerial Decision," WT/MIN(24)/34, WT/L/1189, 4 March 2024.

■ 또한 SPS/TBT 협정 내 개도국 특별 및 차등대우(S&DT) 조항의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각료선언¹⁵²⁾이 채택됨.

145) *Ibid.*, Annex 2 (Proposal for a General Council Decision on Smooth Transition Support Measures in Favour of Countries Graduated from the LDC Category), pp. 5-7.
 146) *Ibid.*, Appendix 1 (List of Special LDC Provisions in WTO Agreements and Decisions to be Included for Smooth Transition).
 147) Ministerial Conference, "WTO Smooth Transition Support Measures in Favour of Countries Graduated from the LDC Category - Ministerial Decision," WT/MIN(24)/34, WT/L/1189 4, March 2024, para. 1.
 148) General Council, "Trade Related Challenge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Way Forward: Proposal for WTO Smooth Transition Measures in Favour of Countries Graduated from the LDC Category - Communication from Djibouti on Behalf of the LDC Group - Revision," WT/GC/W/807/Rev.2, 6 December 2022, Annex 2, para. 2(i).
 149) Ministerial Conference, "WTO Smooth Transition Support Measures in Favour of Countries Graduated from the LDC Category - Ministerial Decision," WT/MIN(24)/34, WT/L/1189, 4 March 2024, para. 2.
 150) General Council, "Trade Related Challenge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Way Forward: Proposal for WTO Smooth Transition Measures in Favour of Countries Graduated from the LDC Category - Communication from Djibouti on Behalf of the LDC Group - Revision," WT/GC/W/807/Rev.2, 6 December 2022, p. 5. 이러한 제안의 배경으로, 최빈개도국은 WTO 보조금협정 부속서7 제(a)항에 따라 수출보조금 금지 의무가 면제되며, 부속서7 제(b)항에 해당되는 (최빈개도국이 아닌) 개발도상 회원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수출보조금 금지 의무가 면제됨. 부속서7 제(b)항 범주에 속하는 개도국은 수출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8년이 허용됨(WTO 보조금협정 제27조 제2항 제(b)호). 그러나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 예정인 회원국의 경우 상기 현행 보조금협정 규정상 어떠한 특별대우도 받지 못하며, 수출보조금 금지 의무를 적용받게 됨.
 151) Ministerial Conference, "WTO Smooth Transition Support Measures in Favour of Countries Graduated from the LDC Category - Ministerial Decision," WT/MIN(24)/34, WT/L/1189, 4 March 2024, para. 3.
 152) Ministerial Conference, "Declaration on the Precise, Effective and Operational Implementation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Provisions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nd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24)/36, WT/L/1191, 4 March 2024.

- 회원국들은 교육 및 기술지원 개선,¹⁵³⁾ SPS/TBT 조치와 관련하여 WTO에 통보된 약속기간에 대한 투명성 개선,¹⁵⁴⁾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이행 및 적용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WTO 무역개발위원회 특별회의(CTDSS), SPS 위원회, TBT 위원회에서 지속할 것에 합의함.¹⁵⁵⁾

아. 그 밖의 사항

1) TRIPS 협정에 따른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

■ 2022년 MC12에서는 TRIPS 협정에 규정된 비위반제소 및 상황제소 적용 유예(모라토리엄)를 연장하는 각료결정¹⁵⁶⁾을 채택함.

-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상황제소(situation complaint)는 회원국 일방의 조치에 WTO 협정(TRIPS 협정) 위반이 없다 하더라도, 동 협정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기대되는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WTO 분쟁해결제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1995년 WTO 출범으로부터 5년 동안 비위반제소·상황제소에 대한 적용 유예가 설정되었으며,¹⁵⁷⁾ 이후에는 회원국들이 각료회의에 관련된 권고를 제출해야 함. 1999년 이래 적용 유예가 매 각료회의에서 연장되어옴.
- 이 사안은 TRIPS 이사회에 몇 차례 회부된 바 있으나, TRIPS 협정에서의 비위반·상황제소 적용 범위와 방법을 두고 회원국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함.

■ MC13에서도 TRIPS 협정 비위반·상황 제소에 대한 유예를 MC14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 회원국들은 TRIPS 이사회가 MC12에서 채택한 2022년 6월 17일 자 결정에 따라, 제소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검토를 지속하여 MC14에 권고할 것을 지시함.
- 해당 기간 동안 회원국들은 TRIPS 협정에 따른 비위반·상황 제소를 개시하지 않기로 합의함.¹⁵⁸⁾

2) 코로나19 백신 관련 TRIPS 협정 의무면제(웨이버)의 확대 적용

■ 2022년 MC12 당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대한 강제실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웨이버를 채택하여 COVID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 의무를 일부 면제하기로 합의함.

- 회원국들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현행 및 미래 팬데믹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에 관한 각료선언¹⁵⁹⁾을 채택함.

153) *Ibid.*, para. 1.

154) *Ibid.*, para. 2.

155) *Ibid.*, paras. 3~4.

156) Ministerial Conference, "TRIPS Non-Violation and Situation Complaints - Ministerial Decision," WT/MIN(22)/26, WT/L/1137, 22 June 2022.

157) TRIPS 협정 제64조 제2항.

158) Ministerial Conference, "TRIPS Non-Violation and Situation Complaints - Ministerial Decision," WT/MIN(24)/39, WT/L/1194, 4 March 2024, p. 1.

159) Ministerial Conference,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WTO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Preparedness for Future Pandemics," WT/MIN(22)/31, WT/L/1142, 22 June 2022.

- (i)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및 그 밖의 필수 의료용품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의 팬데믹 기간 동안 회원국들의 규제 협력과 자발적인 규제 정보 공유를 장려하고,¹⁶⁰⁾ (ii) TRIPS 협정은 회원국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모든 이에게 의약품 접근을 촉진할 권리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해석·이행되어야 하며,¹⁶¹⁾ 회원국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유연성을 규정한 2001년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을 완전하게 활용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¹⁶²⁾
- 위 각료선언의 연장선상에서, MC12 당시 TRIPS 협정상의 일부 의무 면제(웨이버)에 관한 각료결정¹⁶³⁾이 채택됨.
 - 각료결정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도 코로나19 백신 생산·공급에 필요한 특허대상의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TRIPS 협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¹⁶⁴⁾
 - 각료결정 채택일로부터 5년 동안,¹⁶⁵⁾ 즉 2027년까지 회원국들은 백신 생산시설을 다각화하고 수요가 있는 국가로의 수출 생산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음.
 - 모든 개도국은 상기 웨이버 결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코로나19 백신 생산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 이 웨이버에서 옵트아웃(opt-out)할 것이 장려됨.¹⁶⁶⁾ TRIPS 이사회는 이 웨이버 결정을 원용하지 않기로 선언한 회원국의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사항을 별도 기록함.¹⁶⁷⁾
 - 중국의 경우 2022년 5월 10일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상기 TRIPS 웨이버에 대한 옵트아웃을 선언¹⁶⁸⁾

**표 12. TRIPS 협정상 강제실시권의 발동 요건과 2022년 6월 17일 웨이버 결정에 따른
코로나19 백신 관련 의무면제의 비교**

분류	TRIPS 강제실시권 발동 요건	코로나19 백신 관련 의무면제
제31조 제(b)항 (권리자 승인 확보 노력 선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예정자가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하에 권리자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이러한 노력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성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백신 생산·공급 관련 특허대상의 사용예정자는 권리자의 승인을 우선적으로 얻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지 않음.¹⁶⁹⁾
제31조 제(f)항 (사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실시 시행국의 국내시장 공급을 위해 주로 사용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실시 시행국의 국내시장 공급을 위해 주로 사용할 것을 요구받지 않음. • 강제실시를 통해 생산된 제품의 어떠한 비율도, 웨이버 결정에 따른 적격 회원국의 공평한 코로나19 백신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지역 이니셔티브를 통해 해당 개도국에 수출하는 것이 허용됨.¹⁷⁰⁾

160) *Ibid.*, para. 11.

161) *Ibid.*, para. 12.

162) *Ibid.*, para. 13.

163) Ministerial Conference, "Ministerial Decision on the TRIPS Agreement," WT/MIN(22)/30, WT/L/1141, 22 June 2022.

164) *Ibid.*, paras. 1-2.

165) *Ibid.*, para. 6.

166) *Ibid.*, fn. 1.

167) 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cord in accordance with Footnote 1 of the Ministerial Decision on the TRIPS Agreement of 17 June 2022 (WT/L/1141)," IP/C/W/690, 22 June 2022.

168) General Council, "Minutes of the Meeting," WT/GC/M/198, 21 July 2022, para. 5.9.

169) Ministerial Conference, "Ministerial Decision on the TRIPS Agreement," WT/MIN(22)/30, WT/L/1141, 22 June 2022, para. 3(a).

170) *Ibid.*, para. 3(b).

분류	TRIPS 강제실시권 발동 요건	코로나19 백신 관련 의무면제
부속서 제3항 (재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 수입 회원국은 강제실시를 통해 자국으로 실제 수입된 제품의 재수출을 막기 위해, 자국의 행정 역량과 무역전환 위험에 비례하여 가용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 회원국은 웨이버 결정을 근거로 자국으로 수입된 코로나19 백신의 재수출을 막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함. 적격 회원국의 다른 적격 회원국으로의 재수출은 예외 상황에서, 통보요건 충족 시 허용됨.¹⁷¹⁾
부속서 제4항 (효과적인 법적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 회원국은 강제실시를 통해 생산되고 TRIPS 협정 제31조의2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해당 회원국 시장으로 전환된 제품의 수입과 국내 판매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법적 수단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 회원국은 강제실시를 통해 생산되고 웨이버 결정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해당 회원국 시장으로 전환된 제품의 수입과 국내 판매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법적 수단이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함(면제×).¹⁷²⁾
제31조 제(h)항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리자는 강제실시가 이루어진 사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지급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 회원국은 권리자에 대한 보상을 결정할 때 '코로나 백신을 비용부담이 가능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유통체계의 인도적·비영리 목적'과 '국가 비상사태, 팬데믹 또는 유사 상황에 관한 현행 모범관행'을 참작할 수 있음.

자료: 다음에 기초하여 저자가 내용을 보충함. CRS(2022), "World Trade Organization: "TRIPS Waiver" for COVID-19 Vaccines," pp. 9-10.

- 또한 MC12에서는 웨이버의 적용범위를 코로나19 진단기기 및 치료제 생산·공급으로 확대할지 여부에 관해 동 결정 채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즉 2022년 12월 17일까지 결정하도록 규정함.¹⁷³⁾
 - 그러나 2022년 12월 16일 TRIPS 이사회는 WTO 일반이사회가 의무면제 확대에 관한 결정기한을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¹⁷⁴⁾ 이후에도 회원국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논의 기한이 연기되어옴.

■ 이러한 배경에서, 회원국들은 MC13에서 웨이버의 적용범위 확대에 회원국의 컨센서스가 도출되지 않았음에 주목하고 웨이버 확대 여부에 관한 별도의 각료 선언·결정을 채택하지 않음.

- 대신 아부다비 각료선언에서 WTO의 관련 기관이 MC12 각료선언에 따른 작업을 지속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얻은 교훈에 비추어 앞으로의 팬데믹에 대비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함.¹⁷⁵⁾

3) 소규모 경제국 작업프로그램

■ MC13 각료결정¹⁷⁶⁾은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경제국에 관한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me on Small Economies)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소규모 경제국의 고유한 필요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171) *Ibid.*, fn. 3.

172) *Ibid.*, para. 3(c).

173) *Ibid.*, para. 8.

174) 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ragraph 8 of the Ministerial Decision on the TRIPS Agreement adopted on 17 June 2022 - Report to the General Council," IP/C/95, 16 December 2022.

175) Ministerial Conference, "Abu Dhabi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24)/DEC, 4 March 2024, para. 22.

176) Ministerial Conference, "Work Programme on Small Economies - Ministerial Decision," WT/MIN(24)/33, WT/L/1188, 4 March 2024.

- 2022년 MC12에서는 소규모 경제국이 직면한 특정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작업프로그램을 두고 회원국들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각료결정¹⁷⁷⁾을 채택하였음.
- MC13 각료결정은 WTO 무역개발위원회(CTD)의 소규모 경제국 전담 세션에서 2022년 이래 수행한 작업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지시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수준임.
 - 특히 (i) 소규모 경제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생태계 활용의 기회와 한계, (ii) 식량 안보 문제 고려 시 소규모 경제국을 위한 탄력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공급망의 중요성 및 비관세 조치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 (iii) 무역 관련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정책을 소규모 경제국의 무역정책에 통합하는 방법에 관해 추가 검토 및 논의가 무역개발위원회 소규모 경제국 전담 세션에서 이루어질 것을 지시함.¹⁷⁸⁾

4) 무역기술장벽 관련 기술협력 강화

■ MC13 각료선언¹⁷⁹⁾은 제품 표준·규제 관련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TBT 위원회의 작업을 촉진할 것을 규정함.

- TBT 위원회를 통한 투명성, 규제 협력 및 회원국간 협력 지원을 강화할 것을 규정함.¹⁸⁰⁾
- 회원국들은 규제 협력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국제표준 관련 협력은 규제 융합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인정함.¹⁸¹⁾
- 기술규정 초안 단계에서의 회원국간 조기 의견 교환 장려,¹⁸²⁾ TBT 위원회가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디지털 경제, 보건 등 새로운 규제 이슈에 대한 작업을 추진할 것¹⁸³⁾ 등을 규정함.

3. 평가 및 시사점

■ MC13은 MC12에서 이룬 성과를 기반으로, 제한적이기는 하나 WTO 다자무역체제 유지에 필요한 추가 성과를 달성함.

- MC13의 성과는 응고지 WTO 사무총장이 언급해온 ‘신중한 낙관론(cautious optimism)’보다는 분명 낮은 수준이나, 2개 회원국 신규 가입, 복수국간 협상의 논의 진전 등 일부 진전사항은 여전히 주목할 만함.
- 회원국들은 WTO 다자무역체제와 현재 진행 중인 개혁 작업에 대해 분명한 지지 의사를 표하였으며, 비록 다소 미온적인 문구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다양한 이슈에 관한 각료 선언·결정에 합의하였음.
- 협상 중인 다수 이슈에서 MC13 이전에 논의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지정학적 긴장 관계가

177) Ministerial Conference, “Work Programme on Small Economies – Ministerial Decision,” WT/MIN(22)/25, WT/L/1136, 22 June 2022.

178) Ministerial Conference, “Work Programme on Small Economies – Ministerial Decision,” WT/MIN(24)/33, WT/L/1188, 4 March 2024, p. 1.

179) Ministerial Conference, “Strengthening Regulatory Cooperation to Reduc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24)/35, WT/L/1190, 4 March 2024.

180) *Ibid.*, para. 4.

181) *Ibid.*, para. 5(a), (b).

182) *Ibid.*, para. 5(c).

183) *Ibid.*, para. 5(d).

지속되고 있어 MC13에서의 성과 도출에 대한 기대가 낮았음. 다수의 회원국에서 2024년 중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다자주의 차원의 성과 달성을 위해 국가들이 발휘할 수 있는 재량 범위가 위축되는 측면도 있음.

- 차기 WTO 각료회의는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MC13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이 지속될 예정임.

■ [전자상거래] MC13 각료결정에서는 전자상거래의 개발(development) 측면과 개도국·최빈개도국의 필요가 특히 강조됨.

- 회원국들은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개도국·최빈개도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WTO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에서 모라토리엄의 범위·정의 및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논의 및 실증적 증거를 검토하고, 개도국·최빈개도국의 디지털 산업화를 위한 경쟁조건의 공평성 확보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함.
- 다만 모라토리엄의 범위, 정의, 영향에 대한 논의는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WTO에서 지속된 가운데, MC13 각료결정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의 정의와 범위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임.

■ 많은 국가들은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영구적인 관세 미부과를 규정해 놓은 상태임.

- 이러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서는 WTO 차원의 다자적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이 종료되더라도 양자 간 협정을 통한 관세 유예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WTO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을 반대하는 인도의 경우, 양자협정에서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원칙에 합의한 바 있어 향후 WTO 논의에서 인도의 입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인도가 2005년에 싱가포르와 체결한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CA)에는 전자적 전송물의 수입·수출에 관세 또는 그 밖의 관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표 13 참고).

표 13. 인도·싱가포르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에 따른 전자적 전송물 관세 미부과 영구화

원문	국문
<p>ARTICLE 10.4: DIGITAL PRODUCTS</p> <p>1. A Party shall not apply customs duties or other duties, fees or charges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digital products by electronic transmission¹⁰⁻³.</p> <p>¹⁰⁻³ The obligation in paragraph 1 does not preclude a Party from imposing internal taxes or other internal charges provided that these are impos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Article III of GATT 1994 and its interpretative notes as incorporated into this Agreement by Article 2.2.</p>	<p>제10.4조: 디지털 제품</p> <p>1. 당사국은 전자적 전송에 의한 디지털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또는 그 밖의 관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¹⁰⁻³.</p> <p>¹⁰⁻³ 제1항의 의무는 내국세 또는 그 밖의 국내 부과금이 1994년도 GATT 제3조에, 그리고 제2.2조에 의해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3조에 관한 해석주해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한, 당사국이 그러한 내국세 또는 그 밖의 국내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p>

주: 국문은 저자 번역.
자료: 인도·싱가포르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제10.4조.

■ 전자적 전송물 관세 유예 종료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에 관한 MC13 각료결정에는 모라토리엄의 종료기한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모라토리엄 추가 연장에 불리한 문구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을 두고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술'¹⁸⁴⁾을 취하는 일부 회원국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외 다양한 안전에서 논의 진전이 어려운 실정임.
- 이번 각료결정에 따라 '차기 각료회의 또는 2026년 3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후에 모라토리엄이 최종 종료될 경우, 관세 부과를 위한 전자적 전송에 대한 개념과 대상범위, 디지털 제품의 관세분류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회원국간 이견이 많아 실제 관세 부과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디지털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양자·복수국간 무역협정을 통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상호 금지하지 않은 교역국을 대상으로 모라토리엄 종료 이후를 대비한 정부와 기업 차원의 대내외적 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농업] 농업협상에 관해서는 MC13에서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실질적인 성과 도출은 MC14로 연기함.

- MC13을 위한 협상문안에는 국내보조, 시장접근,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수출금지 및 제한, 수출경쟁, 면화무역 및 면화개발지원 관련 이슈,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도(PSH) 등 7개의 광범한 이슈가 논의대상에 포함되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었음.
- MC13에서는 그동안 주요 논의대상 밖이었던 시장접근 분야가 포함되어 논의 진전을 더 어렵게 한 측면이 있음.
 - EU, 일본, 농산물수입국(G10)은 '시장접근'이 논의에 포함되는 것에 반발한 반면, 미국은 협상논의에 국내보조가 포함되어야 한다면 시장접근도 등등하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¹⁸⁵⁾
- MC13 이후 응고지 WTO 사무총장은 MC13에서 마련된 협상문안이 추후 농업협상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함.¹⁸⁶⁾
-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협상문안을 활용하지 않고 협상문안 작업을 새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2024년 4월 16일에 재개된 농업위원회 특별회기를 시작으로 후속 협상에서의 논의 동향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 MC13 협상문안의 형식대로라면, 국내보조 감축 논의뿐 아니라 그동안 주요 논의 밖에 있었던 시장접근 분야도 의장초안에 포함되어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84) Financial Times(2024.3.2.), "WTO agrees to extend ecommerce tariff exemption for 2 more years."

185) Washington Trade Daily(2024.1.31.), "Support for Draft Agriculture Text."

186) 응고지 WTO 사무총장은 수년 동안 농업협상에서 협상을 위한 단일 문안을 도출하지 못했던 반면, MC13에서는 협상문안을 마련하여 후속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함. World Trade Online(2024.2.26.), "WTO ag director: Public stockholding, linkages complicate MC13 talks."

■ [개발] MC13에서 ‘개발’은 WTO의 전 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크로스 커팅 이슈로서, 비관세조치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무역정책과 기후변화 완화의 연관성, 글로벌 공급망, 전자상거래, 디지털 생태계, 소규모 경제국의 다자무역체제에 통합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짐.

- MC13 아부다비 각료선언에서는 회원국들이 ‘WTO 작업에서 개발 측면이 핵심’임을 재확인하고, 최빈개도국의 특별한 취약점과 특별한 필요를 인정하며 다자체제로의 유의미한 편입을 보장하기 위해 최빈개도국의 이해에 적절한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함을 강조함.
- 또한 ‘SPS 협정 및 TBT 협정의 특별 및 차등 대우 조항의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이행에 관한 각료선언’에서도 현행 개도국 특별대우 제도의 일부 측면을 개선하거나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회원국들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작업을 지속할 것을 지시함.
- 개발 관련 MC13에서의 진전에 기초하여, 향후 MC14를 위한 준비 작업에서도 개도국 특별대우 이슈가 비중 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WTO 협정에 규정된 모든 S&DT 조항의 적용과 운영을 개선하는 데는 WTO 차원에서 여전히 상당한 작업이 필요할 것임.
 - 앞서 검토하였듯이 2022년 12월에 LDC 그룹이 요청한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 대상 중 DSU만이 선택되었으며, TRIPS 협정, 농업협정, 무역원활화 협정, 수산보조금 협정, 최빈개도국 대상 일정 웨이버,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에 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음.
 - 또한 MC13 각료결정에서는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 회원국의 WTO 보조금협정상 재분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 검토의 필요성만 인정되어 2024년 12월까지를 권고 시한으로 설정하였을 뿐임.

■ [환경] MC13에서는 무역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 환경보호 목적에서 취해진 일방적 무역조치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다자무역체제의 파편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MC13에서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에 대한 다자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됨.
- 아부다비 각료선언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언급하고 있으나,¹⁸⁷⁾ 무역과 환경 이슈에 관해서는 실제적인 내용 없이 수사적 표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MC13 협상 첫날인 2024년 2월 26일에 열린, WTO 각료회의 최초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각료대화¹⁸⁸⁾에서의 논의내용에 관해서도 협상기간 동안 추가 논의가 없었음.
-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에 대한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이니셔티브에서 MC13을 앞두고 발표한 제안서 및 논의내용에 관해서는 MC13의 최종 결과문서에 반영되지 않음.
 - 2024년 2월 29일 자 기후무역장관연합 성명¹⁸⁹⁾ 및 자발적 활동방안 목록,¹⁹⁰⁾ 다자무역체제의 환경문제 해결에의 기여에 관한 각료선언 관련 18개 개발도상 회원국과 아프리카 그룹¹⁹¹⁾ 의견서,¹⁹²⁾ 플라스틱 오염과

187) Ministerial Conference, “Abu Dhabi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24)/DEC, 4 March 2024, paras. 8, 15, 16, 17.

188) ‘무역과 산업정책,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공간을 포함하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각료대화(Ministerial Conversation 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Trade and Industrial Policy and Policy Space for Industrial Development).

189) Ministerial Conference, “Coalition of Trade Ministers on Climate - Communiqué from Coalition Ministers,” WT/MIN(24)/26, 29 February 2024.

190) Ministerial Conference, “Coalition of Trade Ministers on Climate - Menu of Voluntary Actions,” WT/MIN(24)/27, 29 February 2024.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무역 대화(DPP)의 ‘플라스틱 오염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무역에 관한 2024년 2월 23일 자 각료성명’,¹⁹³⁾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 협의체(TESSD)에서 도출된 공동의장 성명 등이 있었음.

■ [WTO의 의사결정 방식] 대다수 회원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회원국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MC13에서는 소수의 회원국 집단이 WTO의 컨센서스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여 불균형적으로 전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이 포착됨. 특히 인도가 거의 모든 의제에서 협상을 장악하고 있어 MC13이 ‘인도의 잔치(India party)’¹⁹⁴⁾가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실제로 MC13의 성과가 부진한 데는 많은 부분이 WTO의 의사결정 방식과 관련됨.
- 소수 회원국이 체제 전반을 교란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식은 WTO 체제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후속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논의의 실질적인 진전을 저해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의사결정에 관한 WTO 제도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복수국간 이니셔티브] WTO 다자 차원에서 합의 도출이 어려운 시기에 유의미한 대안책이 될 수 있음.

- 전체 WTO 회원국에 의해 완전한 권한위임이 이루어진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여 있음.
- 모든 협상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을 필요로 하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을 취하였던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2008년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며, 이후 일괄타결 원칙의 현실적 대안으로서 전체 패키지가 아닌 개별 안전에 대해 복수국간 협상방식이 활용되기 시작함.
- 복수국간 이니셔티브는 컨센서스 의사결정 방식이 다자적으로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며, 모든 회원국의 컨센서스 의사결정 없이 WTO 내 일부 회원국 간에 특정 이슈에 관한 논의를 진전하기 위함임.
- 복수국간 이니셔티브를 통해 타결된 새로운 WTO 규칙이 이후 다자협정화된 전례도 확인됨.
 - 동경라운드 당시 컨센서스에 이르지 못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부 GATT 체약국이 중심이 되어 비관세장벽과 관련하여 정부조달, 반덤핑, 보조금, 관세평가, 무역기술장벽, 수입허가절차 등 6개 분야에서 복수국간 협정인 ‘코드(Code)’를 체결하였음. 이들 코드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대다수가 WTO 다자체제로 통합됨.

■ WTO 내 복수국간 이니셔티브의 적법성과 WTO 체제로의 편입·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음.

- 2021년부터 인도, 남아공, 나미비아는 서비스 국내 규제,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중소·중견 기업(MSME), 무역과 젠더 등 복수국간 협상이 WTO 협정의 핵심 원칙에 반한다며 그 법적 근거와 지위에 관해 문제를

191)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카보베르데,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남아공,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그룹.

192) Ministerial Conference,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Contribution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o Tackle Environmental Challenges,” WT/MIN(24)/28, 29 February 2024.

193) Ministerial Conference, “Dialogue on Plastic Pollution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lastics Trade (DPP) - Ministerial Statement on Plastic Pollution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lastics Trade,” WT/MIN(24)/14, 23 February 2024.

194) The Wire(2024.3.4.), “Key Events at WTO: India’s U-Turn on E-commerce Moratorium, Tense Exchanges over Fish Subsidies Pact.”

제기해옴.

- 2021년 4월 28일에 발표된 공동 의견서에서 복수국간 이니셔티브가 WTO 협정에 명시된 다자 체제의 기본 원칙과 목표에 반하여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¹⁹⁵⁾
- 이 문제는 현재 IFD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두고 불거지고 있음. 인도는 MC13을 앞두고 2023년 12월에 복수국간 이니셔티브를 통해 타결된 IFD 협정에 반대하고,¹⁹⁶⁾ MC13이 진행 중이던 3월 1일에는 각료성명을 통해 IFD의 WTO 체제 편입에 반대함.¹⁹⁷⁾ 보다 최근에 열린 2024년 3월 22일의 일반이사회에서는 인도에 더하여 남아공, 튀르키예 등 3개 회원국이 동 협정의 WTO 체제 편입에 반대 입장을 개진함.
- 참고로 MC13에서 발효한 서비스 국내 규제(SDR) 신설 규칙과 MC13 개막 전날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한 IFD 협정 모두 WTO 회원국 중 일부만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이니셔티브임. 그러나 양자는 법적으로 이행 방식이 상이함.
 - SDR 신설 규칙의 경우 서비스 국내 규제 복수국간 이니셔티브를 통해 합의된 규칙을 자국의 GATS 서비스 양허표에 반영하는 방식이며, 양허표 수정에 대해 전체 회원국의 컨센서스가 필요하지 않음. 양허표 수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능하나, 한시적으로만 허용됨.
 - 반면 IFD 협정에서 규율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SDR 복수국간 이니셔티브에서와 달리 상품·서비스 양허표 수정을 통한 이행이 불가능함. 이에 IFD 협정에서는 동 협정을 다른 복수국간 협정(정부조달 협정, 민간항공기 협정)이 포함되어 있는 WTO 설립협정 부속서 4에 편입하는 방식을 규정함. 여기에는 WTO 협정의 공식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부속서 4에의 편입에는 모든 WTO 회원국의 컨센서스가 필요함.¹⁹⁸⁾
- 2023년 12월 23일 의견서에서 인도가 IFD 협정의 부속서 4 편입에 반대하며 제시한 논거는 [표 14]와 같음. 이 사항은 MC13 이후에도 IFD 협정의 WTO 체제 편입에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임.

표 14. IFD 협정의 WTO 협정 편입에 반대하는 인도 측 논거(WT/GC/262)

분류	인도 측 주장	상세 논거
1	투자 이슈 관련 협상을 위한 각료급 권한위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회원국들이 투자 관련 사안에 관해 협상할 수 있는 각료급 권한위임(mandate)을 WTO 다자 차원에서 받지 않았음. • ‘무역과 투자 간의 관계’에 관해 협상하지 않기로 한 2001, 2004, 2015년의 WTO 각료선언 또는 일반이사회 결정 등에서, 무역과 투자 간의 관계에 관한 협상 개시에 대해 ‘명시적인 네거티브 권한(explicit negative mandate)’을 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2001년 11월 20일 자 도하각료선언에 따라 ‘무역과 투자 간의 관계’에 관한 협상은 명시적인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에 기초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¹⁹⁹⁾ (ii) 2004년 8월 1일 자 일반이사회 결정²⁰⁰⁾에서는 도하 각료 선언에 언급된 ‘무역과 투자 간의 관계’에 관한 협상을 위한 작업이 도하라운드 기간 동안 WTO 내에서

195) General Council, “The Legal Status of ‘Joint Statement Initiatives’ and their Negotiated Outcomes - Revision,” WT/GC/W/819/Rev.1, 30 April 2021, para. 5.

196) 2023년 12월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인도는 IFD 협정의 부속서 4 편입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며칠 뒤 회람된 2023년 12월 20일 자 인도의 의견서에서 인도는 IFD 협정의 WTO 체제 편입 요청뿐 아니라 IFD 협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WTO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함. General Council, “Statement by India on Agenda Item 18 - General Council Meeting - 13-15 December 2023,” Communication from India, WT/GC/262, 21 December 2023.

197) Ministerial Conference, “Ministerial Statement by India,” WT/MIN(24)/29, 1 March 2024.

198) WTO 설립협정 제10조 제9항.

분류	인도 측 주장	상세 논거
		<p>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합의함.</p> <p>(iii) 2015년 나이로비 각료선언은 아직 협상대상이 아닌 새로운 이슈에 관해 다자적으로 협상을 개시하고자 하는 모든 결정에는 모든 회원국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함.²⁰¹⁾</p> <p>(iv) 2017년 5월의 일반이사회에서 투자원활화 이슈가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인도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투자원활화 논의에 관심이 있던 회원국들은 협상 개시 의사가 없으며 정보 공유 목적의 비공식 대화를 제안하는 것임을 분명히 함.²⁰²⁾</p>
2	복수국간 협상 개시를 위한 회원국 컨센서스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한 협상의 개시에 대한 회원국의 컨센서스가 확보된 바 없음.
3	투자 관련 협상은 WTO의 권한범위를 이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는 회원국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협상의 장을 제공(WTO 설립협정 제3조 제2항) • 투자원활화는 다자간 무역관계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며 투자(investment)는 그 자체로서 무역(trade)이 아님.

자료: 다음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General Council, "Statement by India on Agenda Item 18 - General Council Meeting - 13-15 December 2023 - Communication from India," WT/GC/262, 21 December 2023, Annex (Complete Statement of the Indian Delegation on Agenda Item 18 of the General Council - 13-15 December 2023); Ministerial Conference,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1, 20 November 2001; Ministerial Conference, "Nairobi Ministerial Declaration," 19 December 2015, WT/MIN(15)/DEC; General Council, "Minutes of the Meeting - Held in the Centre William Rappard on 10 and 18 May 2017," WT/GC/M/167, 21 July 2017.

■ IFD 협정 이후 유사한 문제가 예상되는 WTO 내 복수국간 이니셔티브로는 특히 전자상거래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이 있음.

- 2021년 4월에 인도, 남아공, 나미비아는 복수국간 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하는 '접근법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바 있으므로,²⁰³⁾ 이후 IFD 협정 외 다른 복수국간 이니셔티브에서의 성과에 대해서도 WTO 체제 편입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특히 투자원활화 JSI에 이어 전자상거래 JSI에서 복수국간 합의가 타결된 이후 유사 문제가 재발할 수 있음. 전자상거래 JSI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WTO 체제에 반영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임.
 - 전자상거래 JSI에 포함된 실제적 조항의 경우, 상품·서비스 양허표의 기재 대상이 아니므로 SDR 규칙의 이행 방식을 벤치마크하기는 어려우며, IFD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속서 4 편입이 필요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JSI를 통해 타결된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정을 부속서 4에 추가하려면, WTO 설립협정 제10조 제9항에 따른 WTO 협정 개정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모든 회원국의 컨센서스가 요구됨. 현재 인도, 남아공 등 일부 회원국이 전자상거래 JSI에 반대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JSI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회원국이 전자상거래 JSI의 협상결과를 WTO 설립협정 부속서 4에 편입하는 데 반대할 경우에 대한 협상 전략 및 통상법적 대응논리 마련이 중요함.

199) Ministerial Conference,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1, 20 November 2001, para. 20.
 200) WTO, "Doha Work Programme - Decision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1 August 2004," WT/L/579.
 201) Ministerial Conference, "Nairobi Ministerial Declaration," 19 December 2015, WT/MIN(15)/DEC, para. 34.
 202) General Council, "Minutes of the Meeting - Held in the Centre William Rappard on 10 and 18 May 2017," WT/GC/M/167, 21 July 2017, para. 65.
 203) General Council, "The Legal Status of 'Joint Statement Initiatives' and their Negotiated Outcomes - Revision," WT/GC/W/819/Rev.1, 30 April 2021.

■ 복수국간 협상 결과의 WTO 협정상 적법성을 확보하고 편입·이행하는 방식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

- 현재 인도 등 일부 회원국이 복수국간 이니셔티브에 대해 개진한 반대 논리에 비추어볼 때, 복수국간 협상의 '개시'와 관련하여 WTO 다자 차원의 공식적인 권한위임이 없더라도 일부 회원국이 적법하게 복수국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반대국의 논리에 대한 반박근거로서, 일부 당사자 간에만 다자조약을 변경하는 합의('inter se modification')에 관한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41조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음.²⁰⁴⁾
- 그 외에 복수국간 협상 결과를 WTO 체제 내에 공식화하는 데 표결(voting)을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의사결정방식을 WTO 협정상 명확히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WTO 설립협정 제10조(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음.
- 마지막으로 협상 측면에서, 인도 등 이의제기국과 입장을 달리하는 다수의 개도국에 의한 동료 압박(peer pressure)을 통해 소수의 이의제기국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일례로 2024년 3월 21일 일반이사회 정례회의에서는, 소수의 회원국이 컨센서스 도출을 계속 방해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이의제기의 근거에 대한 검토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이의제기국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어 향후 논의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KIEP**

204) 1969년 조약법협약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자조약(WTO 협정) 내 둘 이상의 당사국은 그들 사이에만 다자조약(WTO협정)을 변경하는 합의(복수국간 협정 결과)를 성립시킬 수 있음. 그러한 변경이 다자조약(WTO협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그러한 변경이 다른 당사국(복수국간 협정에 반대하는 WTO회원국)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자조약(WTO 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함. WTO 협정은 복수국간 이니셔티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복수국간 이니셔티브가 WTO 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반하지 않으며, 동 이니셔티브에 불참하는 WTO 회원국(복수국간 협정에 반대하는 WTO 회원국)의 권리·의무가 변경된 바 없다는 점을 보일 수 있을 경우 반박논리로서 조약법협약 제41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